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5年 8月
碩士學位論文

中·韓 FTA 知識財產權 協商과
中國의 對應方案에 관한 研究

朝鮮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張思晴

中·韓 FTA 知識財產權 協商과
中國의 對應方案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Negotiat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China-Korea FTA and the counterplan of China

2015年 8月 25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張思晴

中·韓 FTA 知識財產權 協商과
中國의 對應方案에 관한 研究

指導教授 全 義 天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5年 4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張 思 晴

張思晴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

主 審	朝鮮大學校 教授	朴魯廣	
委 員	朝鮮大學校 教授	金錫珉	
委 員	朝鮮大學校 教授	全義天	

2015年 5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목 차

ABSTRACT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구성	3
1. 연구 방법	3
2. 연구 구성	4
3. 선행연구의 검토	5
제2장 중·한 FTA 협상과 지식재산권 제도	7
제1절 중·한 FTA 협상	7
1. FTA의 개념	7
2. 중·한 FTA의 추진 배경	8
3. 중·한 FTA협상 진행 현황	12
4. 중·한 FTA의 기대효과	17
제2절 중·한 지식재산권 제도와 보호 현황	20
1. 지식재산권의 정의	20
2.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21
3.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보호 현황	24
4.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보호 현황	33

제3장 중·한 FTA의 지식재산권 협상 주요 이슈	38
제1절 상표권 분야	38
1. 상표권의 의의	38
2. 상표의 경제적 가치	40
3. 중·한 양국간 상표권에 관한 이슈	41
제2절 의장(디자인) 분야	44
1. 디자인권의 의의	44
2. 디자인권의 기능 및 역할	45
3. 중·한 양국간 디자인권에 관한 이슈	46
제3절 특허 분야	48
1. 특허권의 의의	48
2. 특허권의 보호 필요성	49
3. 중·한 양국간 특허권에 관한 이슈	50
제4절 집행(Enforcement) 분야	50
1.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의 구조적 문제점	50
2. 중국의 행정·형사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	51
제4장 중·한 FTA 지식재산권 협상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안	53
제1절 전담행동 전개	53
제2절 일상 집행 강화	54
제3절 지식재산권 사범 업무 강화	55
제4절 지식재산권 교육과 인재 강화	55
제5절 지식재산권 홍보와 문화 건설 추진	56
제6절 지식재산권 대외교류 및 협력 확대	57

제7절 지식재산권 실시의 조직적인 협력 강화 57

제5장 결 론 59

참고문헌 61

표 목 차

<표 1> 중·한 FTA의 추진 과정	15
<표 2> 지식재산권의 분류	20
<표 3> 한국의 정부기관별 지식재산권 보호 역할 분담	26
<표 4> 한국의 FTA별 지식재산권 협상 주요내용	30
<표 5> 한국의 지식재산권 종류와 관리기관	38
<표 6> 중국의 지식재산권 종류와 관리기관	39

ABSTRACT

A study on the Negotiat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China-Korea FTA and the counterplan of China

Zhang SiQing

Advisor : Prof. Jun, Eui-Cheon Ph.D.

Department of Trad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With the rapid economic growth of China and the increasing highlighting of the importance of overseas production base of South Korea, the investment scale of the two countries increasingly speeds up. When China becomes the biggest export market of South Korea, it also becomes the second-largest import market of South Korea. Therefore, the economic cooperation and trad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draws widely attention. The problems about FTA between the two countries also becomes the focu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and the protection situation of China and South Korea. With the flexible use of related literature, research report, weekly publication and other China and South Korea 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the study also discusses the core focus of the dispute in FT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egotiations of China and South Korea and puts forward the plan of China.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can be divided into five chapters as follows.

Chapter 1 Introduction introduces the background, propose, method and content of the study.

Chapter 2 Theoretical background tries to analyze the concept of FTA, the progress status of the FTA negoti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e advance background and hopeful research results, meanwhile, analyzes the defini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importance of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intellectual property system and protection status in China and South Korea.

Chapter 3 mainly discusses the dispute focus in the FT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egotiations of China and South Korea.

Chapter 4 mainly reviews the response plan of China about FT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China and South Korea.

Chapter 5 concludes the above contents and ends the paper.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 각국은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동안 통상규범에 의존해 오던 통상전략에서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로 칭함)을 주요 통상정책 수단으로 전환하고 지리적 인접 여부는 물론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와도 상관없이 다양한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한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¹⁾, 중국경제의 급부상과 동시에 한국의 해외 생산기지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양국간의 무역 투자 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세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국과 중국의 무역액은 2,35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 상승하였다. 그 중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453억3000만 달러로, 0.4% 감소하였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900억7000만 달러로, 8.5% 증가하였다. 한국의 무역흑자는 552억6000만 달러를 기록해 12% 감소하였다.²⁾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경제무역 파트너가 되고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 최대 수입대상국,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 간 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관심이 끌고 있다.

따라서 중·한 양국은 2004년 9월부터 ASEAN+3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중·한 통상장관 회담에서 민간공동연구를 제안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2005년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와의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2006년 11월 민간공동연구가 종료하였으며, 2006년 11월부터는 한국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2007년부터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7년

1) 한·중 관계변화는 1992년 수교 초기의 우호협력관계, 1998년 협력동반자관계,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발전하였다.

2) 『2014년 한·중 무역 현황』 중국경제투자연구소 중.경.투. <http://cafe.naver.com/chinaerc/17125>

부터 중·한 양국에서 공동연구를 개최한 후 2010년 5월 공동연구를 종료하였다. 2012년 3월 사전 실무협의를 개최한 후 2012년 5월 2일 북경에서 중·한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2012년 5월 14일 북경에서 1차 협상, 7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에서 2차 협상,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위해에서 3차 협상,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제4차 협상, 2013년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중국 하얼빈에서 5차 협상을 진행하였다. 2013년 9월에 1단계 협상을 타결하여 상품 양허에 관한 품목수기준 90%, 수입액 기준 85% 자유화율 기준을 설정하였다. 2013년 11월에 인천에서 제8차 협상, 2014년 1월 시안에서 제9차 협상, 2014년 3월에 고양에서 제10차 협상, 2014년 5월에 메이산에서 제11차 협상, 2014년 7월에 대구에서 제12차 협상, 2014년 9월에 북경에서 제13차 협상, 2014년 11월에 북경에서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였다. 중국 상무부는 2015년 2월 25일 중·한 양측이 중·한 FTA 전체 문건에 대해 가서명했고³⁾, 6월 1일에는 협정에 정식서명하여 현재 중·한 FTA협정은 양국 국회의 비준을 남겨 두고 있다. 따라서 중·한 FTA협상은 모두 완료되었고, 그리고 이 협정에 따라 향후 중·한 양국은 90% 정도되는 생산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중·한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분야는 그렇게 중요성을 높이 평가받는 분야가 아니었다, 특히 중·한 간은 농산물, 어업 등 민감한 분야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논의는 조금 소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런데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한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상하여 지식재산권을 협상 대상으로 삼게 되었으며 협상의 진행에 있어서도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지식재산권 분야를 주요한 협상분야로 격상시켰다.⁴⁾ 이러한 노력이 필요했던 이유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이 한국에 비추어 보면 차이가 나 있으며 FTA를 통해 수출입이 증가할 경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쟁을 감소하기 위해서 FTA체결과정 중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것을 적극적으로 협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조화의 움직임은 기존의 WIPO 혹은

3)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가서명 완료”, 보도자료. 2015.2.26.

4) 중·한 FTA 4차 협상에서부터 지식재산권 분야를 협상내용에 포함하였다.

WTO/TRIP를 통한 국제보호의 움직임은 보완하는 차원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주도하에 등장하였다. 초기에는 선진국이 시장접근에 대한 대가로 개도국의 지식재산권보호 강화를 요구하는 방식의 지식재산권 협상이 이루어져 왔으나, 점차 FTA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FTA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그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복잡해지게 되었다. 이는 FTA협상에 참여하는 국가간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달라 “협정” 마다 임하는 전략과 의도가 상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 칠레, 싱가포르, EFTA 등을 상대로 소극적인 전략을 취해 왔고, 한·미 FTA 지식재산권 협상에서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미국측의 공세에 방어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중·한 FTA 지식재산권 협상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고찰,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정기 간행물, 중·한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의 활용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보호 현황을 검토하고 중·한 FTA 지식재산권 협상에 핵심쟁점을 점검해 보고 중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구성

1. 연구 방법

세계경제는 세계화와 지역경제통합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 가운데 지역경제통합은 자유무역지대 혹은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경제공동체 (Economic Community), 경제연합 등 다양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FTA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세계무역질서의 변화에 소외되지 않고, 또 무역전환

5) 특혜무역협정이라고도 불리는 지역무역협정은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나, 다자규범인 GATT 제24조 제8항 (b)에 제시된 정의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역무역협정은 ‘체약국간에 체약국産 제품에 대해 관세와 기타 제한적인 무역규정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서 제거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효과(trade diversion effect)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중·한 FTA도 이러한 배경을 기초로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이 FTA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속성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교역관계가 긴밀할수록 경제통합의 이익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한국과 중국은 FTA 체결로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부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한국과 중국간에 협상중인 중·한 FTA의 지식재산권 주요쟁점과 대응방안을 고찰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 논문을 참고하고, 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통계국, 중국 상무부 등의 각종 보고서, 정책자료, 학술지, 기타 간행물, 인터넷 사이트 등의 문헌조사 방법에 주로 의존하여 진행하였다.

2. 연구 구성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이루어지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방법과 내용, 그리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제2장은 중·한 FTA협상 진행 현황, 추진 배경,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중·한 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와 보호 현황을 고찰하였다.

제3장은 상표권, 의장권, 특허, 집행 4가지의 분야에서 중·한 FTA의 지식재산권 협상 이슈 점검을 기술하였다.

제4장은 중·한 FTA 지식재산권 협상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안을 고찰하였다.

제5장은 결론이다.

6) 이충배·노진호·서윤희,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양국의 FTA 추진전략 비교”, 『관세학회지』 제12권 제1호, 한국관세학회, 2011.2.28. p.212.

3. 선행연구의 검토

중·한 FTA 지식재산권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오근엽·원종익(2005)은 경쟁력이 있는 상품의 수출에 한해 수입국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정도를 강화하면 한국의 수출증대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특히 경제발전 단계가 높고 모방 능력이 강한 국가들일수록 한국의 수출증대 효과 더욱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⁷⁾

강호진·박건영(2006)은 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효과를 교역 상대국별, 산업별로 세분화하여 한국의 수출효과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가 한국의 수출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교역상대국과 산업을 구분한 분석의 결과에서는 주로 개도국에 대한 수출과 기술 수준이 낮은 산업의 수출에서 지식재산권 강화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였다.⁸⁾

조미진·엄부영·박현정(2007)은 “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점검”에서 경제 글로벌화 가속에 따른 무한경쟁하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지식재산권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중·한 FTA 협상에서의 핵심쟁점과 한국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⁹⁾

한상욱(2009)은“韓·中 知識財産權의 管理制度와 保護政策에 관한 研究”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중국의 관리제도와 침해방법의 사례 제시는 한국의 중국 진출 시 사전적 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¹⁰⁾

7) 오근엽·원종익,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과 한국 수출의 관계 실증분석”, 국제통상연구 10권1호, 한국국제통상학회, 2005.

8) 강호진·박건영, “외국의 지적재산권 정책이 한국의 수출규모에 미치는 영향”, 무역학회지 제 31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6.8.

9) 조미진·엄부영·박현정, 「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점검」,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7-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12.24.

10) 한상욱, “한·중 지식재산권의 관리제도와 보호정책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김형근(2011)은 “한·중 FTA에서의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에 관한 연구-지리적 표시 제도를 중심으로-” 에서 한국과 중국의 FTA협상에서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원만한 합의와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중·한 양국의 지리적 표시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한 FTA에서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협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¹¹⁾

이지환(2014)은“국제 FTA에 비취본 FTA의 지식재산권 전략”에서 한·중 FTA상 한국의 지식재산권 협상전략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분야 협상에 관하여 과도히 자국 편향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중국의 창조성을 枯死시키는 근시안적이고 小貪大失하는 過保護에 불과함을 자각하게 하여, 한·중 FTA에서 중국 스스로 국제적 지식재산권 범규범에 적합한 전향적 시각에 입각하여 한·미, 한·EU FTA와 중·스위스 FTA 중간 수준의 지식재산권 범규범을 창설토록 기회를 부여하여, 중국에 과도한 법적 부담을 일시에 지우지 않으면서도, 한국에 실효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상생적 협상전략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¹²⁾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서와 논문은 한국의 입장에서 중·한 FTA 지식재산권에 대해 분쟁시 한국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이었으나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보호 현황을 검토하고 중·한 FTA 지식재산권 협상에서 상표권, 의장, 특허, 집행(enforcement) 분야의 핵심쟁점을 점검해 보고 중국의 입장에서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11) 김형근,“한·중FTA에서의 지적재산권 분야 협상에 관한 연구-지리적 표시 제도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57집, 중국학연구회, 2011.9

12) 이지환,“국제 FTA에 비취본 한-중 FTA의 지식재산권 전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2.

제 2 장 중·한 FTA 협상과 지식재산권 제도

제1절 중·한 FTA에 협상 현황

1. FTA의 개념

FTA는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간다.¹³⁾

FTA의 전통적 형태는 체결국 간 상호적으로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는 것이지만 최근 몇 년의 FTA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그 내용은 상품 무역자유화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투자와 정부구매, 지식재산권, 표준화 등 더 많은 영역이 포함되었다. FTA와 WTO는 모두 무역자유화의 지향하고 있지만 다수의 사람은 이것을 하나의 상호 보충하고 상호작용하는 관계라고 인정하고 있다.

2015년 1월 기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발표건수는 395건이며, 이 가운데 상품무역을 다룬 자유무역협정(FTA)이 22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체 395건의 협정 중 95년 이후에만 전체의 87.3%

13) 전태형(2013), 『한·중FTA의 필요성과 한국무역에 미치는 영향-부산기업사례의 적용』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7.

에 해당하는 345건이 발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⁴⁾

2. 중·한 FTA의 추진 배경

중·한 양국의 경제협력이 빠르게 융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2월 25일에 중·한 양국은 자유무역협정에 가서명을 완성하고 협정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중국은 한국과 양국 자유무역협정의 첫 걸음은 마무리되었고 목표는 2015년 하반기에 협정문의 정식 발효를 기대하고 있다. 일련의 절차 후에 한국 정부가 국회에 협정을 제출하고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중·한 FTA는 2015년에 하반기 정식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¹⁵⁾

중·한 FTA 협정문 서명으로 인하여 다각적인 FTA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면서 한국경제의 글로벌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한 FTA는 지난 2002년 4월 방한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중·한 FTA 조기 체결을 희망한다는 공식입장을 거듭 밝힐 정도로 중국의 의지가 강하였기 때문이다. 산·관·학 공동연구가 2006년 11월에 끝나고 한국 내에서 중·한 FTA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2007년 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였다.

중국이 처음부터 FTA에 큰 관심을 가져왔던 것은 아니다. 1991년 APEC 가입 이후 상당기간 역내협력에 대해 회의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했으며 한 때는 ‘아시아통화기금(AMF)’구상에 대해 반대 입장까지 보였다. 그러나 1999년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수동적이던 지역경제통합 추진전략이 능동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 특히 2001년 WTO 가입 이후 세계경제에 급속히 편입되면서 세계화와 지역경제협력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사실을 인식, FTA 등 지역협력 추진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변신하였다.

중국이 FTA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¹⁶⁾

1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전세계 지역무역협정 현황”, 2015.1. pp.1-2.

15) 『中韓貿易額或將突破3000億美元』南方日報 2015. 02. 27.

16) 쉰자(沈佳), “중국의 FTA 추진배경과 전략 해부”, LG주간경제, LG경제연구원, 2007.5.16. pp.26-27.

첫째, FTA를 추진하는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관세인하 및 비관세 장벽철폐를 통해 시장 접근성 향상과 산업고도화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고품질 저가격의 상품과 서비스 구입 기회 확대와 같은 소비자 측면의 이득에도 관심을 두고 있었다.

둘째, 세계무역질서 변화에서 소외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남들이 다 빠르게 지역통합을 추진하는 와중에 가만히 있으면 국제통상 무대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내몰리는 '변연화(邊緣化)' 상황에 부딪히고 무역전환효과로 피해를 입기 마련이다.

셋째, FTA를 통해 대선진국 교역의존도를 낮춤으로써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무역마찰, 특히 급속히 늘어나는 중국기업을 상대로 한 반덤핑 제재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 한국의 추진배경

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가 지역주의에 우월해야 하고 지역주의는 다자주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지역주의 현상과 다른 국가들의 FTA 정책으로 한국은 무역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차별대우를 받게 되었다. 즉, 역외국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대외관세율과 비관세 무역장벽은 한국 기업의 시장접근을 점차 어렵게 만들고 있었고, 다자주의를 통하여 지역주의의 배타성이나 역외차별적 요소를 제거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서 다자주의 차원의 개선만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WTO의 출범 이후에도 계속 확대되는 지역주의 현상에 대처하고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FTA를 통한 개방정책이 필수적이고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FTA등이 다양한 무역 분야에서 발전된 규범형태를 포함하므로 개방정책에 수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WTO 등에서 FTA가 세계무역자유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된 사실도 한국의 FTA 정책의 추진에 긍정으로 작용하였다.¹⁷⁾ 또한 한국은 자본

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FTA에 대한 제국의 입장과 한일 FTA와의 관계설정』, 2003.

수지 개선뿐 아니라 외국기업의 선진 기술을 이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FTA를 통한 수출시장 확대는 한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국내시장의 규모와 투자규제 완화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FTA를 체결함으로써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특혜원산지규정을 만족시키는 경우 한국의 FTA 회원국에 대한 수출시 관세철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나. 중국의 추진배경

중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지원이 지연되어 금융위기가 주변국으로 확장됨에 따라 지역 내 양자간 또는 다자간 틀 내에서 보다 즉각적인 지원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역정책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또한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역협력이 실질적으로 역내교역 증가와 역외국의 상대적 차별에 직면하고 최근 국가간 지역협력을 통해 시장을 확보하고 정치 경제 등 세계적인 주요 현안에 대한 국제적인 발언권을 높이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감에서 경제협력의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었다.

2001년 11월 WTO가입에 따라 관세인하, 시장개발 등 보호무역장벽이 철폐되면서 무역자유화와 중국 경제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경제 이외에 정치 및 외교에서도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아세안과 한국, 일본 등 FTA를 서두르는 것은 수출시장의 확대, 아시아에서 경제적 주도권 확보, 중국의 전략적 안전 도모 등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고도성장 지역으로서 중국의 수출시장으로 매우 중요하다.

아세안과의 FTA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자유무역지역 설립 협상 때 주도권 확보와 중국이 ASEAN 10개국을 지원세력으로 동아시아경제통합의 구체적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 영향력 발휘가 가능하고, 지역 FTA를 주도함으로써 WTO 등과의 새로운

협상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대표로서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¹⁸⁾

또한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 등의 군사기지 신설과 남중국해 주변기지 확대 등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형국의 미국에 대항하여 FTA 체결 이외에도 아시아 각국들과 영유권 문제, 테러 협력 등 안전보장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실로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간의 석유 안보를 위해 원유를 미얀마에서 윈난성까지 직접 수송하는 방안과 메콩강 개발까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¹⁹⁾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FTA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경제적인 목적 외에 외교, 안보적인 목적에서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양자간의 FTA를 통해 상대국의 관세 인하 및 비관세장벽 완화 등 시장접근성 향상과 무역마찰의 완화,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인정, 서부 대개발 및 동북 진흥의 촉진, 원자재와 자원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외교적 측면에서 동북아 내지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리더십 강화, 대미 견제와 차별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의 관련 문헌에서는 중국의 FTA 추진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국가별로는 인접 지역과 개도국이 우선이고, 동기에서는 에너지 및 자원의 확보,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과 같은 전략적 동기가 우선하고 있다. 이 외에 해외시장진출, 국내지역개발촉진, 산업경쟁력제고 등과 같은 경제적 동기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FTA 추진에서 중·한 FTA는 에너지, 자원 확보, 시장 확대, 선진국 우회 수출이라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을 촉진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중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변국과 우선적으로 FTA를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 중국과의 상호 보완적인 협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의 FTA 추진 원칙 등과 매우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FTA 협상의 용이성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의 FTA 전략으로 미루어 중국의 4대 교역국가인 미국, 일본, EU, 한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협상 추진이 용이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FTA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²⁰⁾

1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RCEP 협상동향과 참여국 및 산업계 반응』, Global Market Report 15-006, 2015.1.28.

19) 중리평(2013) 『중한 FTA에 추진에 따른 경제효과 및 대응방안』,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중·한 FTA협상 진행 현황

2002년 중국은 중·한FTA 검토를 제안하였다. 2004년 9월부터 ASEAN+3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간 협의하기 시작하고 2014년 11월까지 13년을 거치고 결국 체결하였다. 그 동안 중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과의 FTA 추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중국의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는 재임 시부터 한국과의 FTA 추진에 노력해 왔으며 한·미 FTA 타결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중·한 FTA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2005년 8월 이샤오준(李小軍) 중국 상무부 차관보는 중·한 FTA의 최대 걸림돌인 농산물 문제에서 큰 폭으로 양보할 뜻까지 있다고 전달하였다.

또한 2007년 4월 원자바오(溫家寶)는 4월 10일 한국 방문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FTA 공동연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중·한 FTA를 조속히 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원자바오(溫家寶) 중국총리는 중·한 FTA체결로 양국의 구조조정과 협력분야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²¹⁾

중국의 기업들 역시 중·한 FTA에 상당히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2007년 중국의 7대 도시 178개 중국기업(제조업 124개사, 서비스 53개사)을 상대로 중·한 FTA 인식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기업들은 중·한 FTA 추진에 대해 '매우지지' 20.2%(36개사), '지지' 73.6%(131개사)로 응답해 93.8%(167개사)가 중·한 FTA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²⁾

또한 산업별 중·한 FTA 지지율을 제조업에서 섬유류, 가죽류, 석유화학, 전자통신설비, 운수설비 등이 전원 찬성 입장이며, 금속 및 비금속과 식품가공은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서비스업에서는 부동산과 금융, 숙박음식업 등이 전원 찬성 입장이나 정보통신업과 운수창고업, 유통업 기업들의 지지율은 각각 60%, 75%, 80%정도였다. 이들 기업들이 중·한 FTA 지지하는 이유로는 '중·한 기업 협력이 확대된 것이기 때문' 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의 수입 관세인하', '한국산 제품 수입가격 인하', '한국의 비관세 장벽 감소' 의 순으로

20) 이희욱(2009) 『한·중 FTA와 동아시아 지역주의』, 풀빛

21) 매일경제, 2006년 5월 26일.

22) 박한진·정준규, 『중국기업의 한중 FTA인식과 전망』, Global Business Report 07-115, KORTA 상하이 무역관, 2005.5.

조사되었다.

한편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기업과 성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중·한 FTA에 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415개 응답기업 가운데 중·한 FTA 체결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71.3%로 반대의견(28.7%)을 압도했으며,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의 찬성률이 83.6%, 제조업이 65.5%였다.²³⁾ 양국 업계는 원칙적으로 중·한 FTA에 찬성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게 한국은 3대 교역국이므로²⁴⁾ 중·한 FTA는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동북아 FTA 나아가 동아시아 FTA의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1992년 국교정상화 이후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중국과 한국은 2003년 수립한 '진면적 협력동반자관계'에서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시켰다. 그 동안 양국의 경제가 성장함과 맞물려 경제통상 분야에서 가장 큰 성장을 보였다. 2008년 기준 한국 측 통계에 의하면 1992년 수교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간 교역규모는 2005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7년에는 14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중국은 2003년 이후 한국의 제1위 교역 대상국이자 제1위 무역 흑자 상대국이었다. 반면 한국은 중국의 제2위 수입국이자 제4위 수출국이다.

또한 수교 첫해인 1992년 한국의 대중 투자가 1억 4000만 달러(실행액기준)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 기준 한국의 대중 투자는 33억 1000만 달러로 1992년에 비해 무려 23.6배 신장하여 2002년부터 중국은 한국의 최대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1990년대 이후부터 중·한 간 무역 및 투자 방면에서 상호의존관계의 급속한 강화와 그로 인한 무역수지 불균형과 직접투자에 관한 분규도 점차 늘고 있다. 이러한 무역 및 투자관련 마찰 요인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양국 간 호혜적 분업 기회를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는 FTA와 같은 제도적 통합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²⁵⁾

23)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조사본부 FTA팀, “한중 FTA 기업의견조사 결과”, 2006.7

24) 중국해관통계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중국의 무역동반자는 EU, 미국, 일본, ASEAN, 홍콩, 한국 순이며, 그 교역량은 각각 3,561.5억 달러, 3,020.8억 달러, 2,360.2억 달러, 2,025.5억 달러, 1,972.5억 달러, 1,599억 달러이다. 이 중 EU, ASEAN, 홍콩지역을 제외하여 국가별로만 보면 한국이 중국무역에서 제3위를 차지한다.

2002년 중국은 중·한 FTA 검토를 제안하였다. 중국과 한국은 2004년 11월 ASEAN+3 회담 중 개최된 중한 정상회담에서 2005년부터 2년간 중·한 FTA 민간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간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공동연구가 개시되어 2006년 11월 종료되었다.

1년차 민간공동연구에서 양국의 FTA 추진정책, 거시경제효과, 경쟁력분석 및 민감 분야 도출, 투자에 미치는 효과 등을 집중 연구하였다. 2차 민간 공동연구에서 한국 측은 농수산물, 섬유-의류, 서비스 관심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였고, 중국 측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기계 서비스 관심분야에 대해 집중 분석하였다.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민간 공동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중·한 FTA 체결 시 거시 경제적 효과는 단기적으로 한국 2.4%, 중국은 0.4% 경제성장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본축적을 고려한 장기적인 효과는 한국이 3.1%, 중국이 0.6%의 경제성장 효과를 기대한다고 보았다.²⁵⁾

중·한 FTA 산·관·학 공동연구의 연구범위와 내용은 중·한 FTA 체결시 경제적 효과, 중·한 FTA 포괄범위, 산업별 영향 분석, 민감 품목의 보호방안 등이다. 한국 측은 상품, 서비스, 투자는 물론 지식재산권, 정부 조달, 경쟁정책 등 포괄적인 FTA 선호와 함께 농수산물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반면 중국 측은 자동차, 철강, 화학, 기계, 화장품 등 민감 산업에 대한 FTA 영향 연구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이의 극복방안으로 양국 업계 간의 대화채널 구축을 희망하였다.

양측대표간은 산·관·학 공동연구 제4차 회의를 통해 상품(제조업, 농림수산업)및 여타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제조업, 원산지, 통관, 지식재산권, 경쟁, 경제협력, 위생 및 검역조치 8개 소 분야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한국 측은 산·관·학 공동 연구 제5차 회의에서 농수산업 분야의 민감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방안마련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동 분야에 대한 보고서 내용 등에 대해서

25) 정인교.(2010) 『FTA 통상론』, 율곡출판사 p.123.

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정책연구 03-04, 2004.11.30.

는 양측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후 중·한 양국은 14차 협상을 통해 2014년 11월 10일 중·한 FTA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2015년 2월 25일에는 중·한 FTA 협정문에 가서명(initialing)을 거쳐 6월 1일 영문본·한글본·중문본 등 3개의 한·중 FTA 협정문을 서명하고 이를 교환함으로써 지난 2012년 5월 협상개시 이후 3년만에 정식서명 절차를 완료하였다.

<표 1> 중·한 FTA의 추진 과정

일자	주요내용
2004.9	ASEAN+3 경제장관회의 계기 중·한 통상장관회담시 민간 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
2005	2005년부터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간 공동연구 개시, 1년차 연구수행
2006	민간공동연구 2년차 연구수행 후 11월 연구종료
2006.11.17	APEC 각료회의 계기 중한 통상장관회담에서 중·한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2007년부터 개시하기로 합의
2007.3-23	중·한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 개최(북경)
2007.7.3-4	중·한 산관학 공동연구 제2차 회의 개최(서울)
2007.10.23-25	중·한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3차 회의 개최(위해)
2008.1.18-20	중·한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4차 회의 개최(제주)
2008.6.11-13	중·한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5차 회의 개최(북경)
2010.2	중·한 FTA 산관학 공동연구 수석대표간 협의(북경)
2010.5.23	중·한 통상장관 회담시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방안논의(서울)
2010.5.28	양국 정상 임석하에 양국 통상장관,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관련 양해각서 서명(서울)
2010.9.28-29	중·한 FTA 정부간 사전협의 제1차 회의 개최(북경)

2011.4.11	중·한 통상장관회담(북경)
2012.2.24	중·한 FTA 공청회
2012.3.1-2	중·한 FTA 추진 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서울)
2012.3.22-23	중·한 FTA 추진 관련 사전 실무협의 개최(북경)
2012.5.2	중·한 FTA 협상개시 선언(북경)
2012.5.14	제1차 협상(Kick-off meeting)개최(북경)
2012.7.3-5	제2차 협상 개최(제주)
2012.8.22-24	제3차 협상 개최(웨이하이)
2012.10.31-11.1	제4차 협상개최(경주)
2013.4.26-28	제5차 협상 개최(하얼빈)
2013.7.2-4	제6차 협상 개최(부산)
2013.9.3-5	제7차 협상 개최(웨이팡)
2013.11.18-22	제8차 협상 개최(인천 송도)
2014.1.6-10	제9차 협상 개최(중국 서안)
2014.3.17-21	제10차 협상 개최(일산)
2014.5	제11차 협상 개최
2014.7	제12차 협상 개최
2014.9.22	제13차 협상 개최
2014.11.6	제14차 협상 개최
2014.11.10	실질적 타결
2015.2.25	중·한 FTA 가서명
2015.6.1	중·한 FTA 정식서명

자료:한·중FTA 홈페이지 <http://www.fta.go.kr/cn/info/2/>

4. 중·한 FTA의 기대효과

가. 경제 성장 촉진

중·한 FTA체결은 중·한 양국의 무역 및 투자 증대 등을 가져와 각국의 소득 및 경제성장율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게 되고 양국 모두에 상당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한 양국의 일부 품목들에 대한 관세율이 아직도 높은 수준이어서 양국가간 FTA 체결시 무역자유화에 따른 경제성장 촉진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관세수준은 이미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상황이나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무관세정책을 취할 경우 단기적으로 상당한 무역창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장벽 외에 무역 제한적인 비관세장벽도 낮지 않다. 양국가간 FTA로 국간 비관세장벽이 철폐 또는 완화되게 되면 그 만큼 무역자유화에 따른 경제성장 촉진효과가 커지게 될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반균형모형(CGЕ Model)을 이용하여 중·한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GDP는 3.27~5.14% 증가하고 중국의 GDP도 0.89~1.54% 증가할 것으로 한국이 중국보다 높은 GDP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을 추정하였고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중·한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소득 수준은 25년간 3.10~5.15% 증가, 즉 연평균 성장률이 0.12~0.2% 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었고, 중국이 25년간 1.71~3.08%의 소득이 증가하고 연평균 성장률은 0.07~0.12% 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 역내 산업 구조 조정

중·한 FTA가 체결되면 역내 무역자유화로 역내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 중한 양국이 비교우위산업에 집중함에 따른 양국가간 산업분업이 있게 되고, 과잉 중복 투자 부문 조정 등 역내 기업 간 비교 경쟁력 우열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쟁이 치열해진 일부 산업분야에서의 역내 동종 업체 간 공동 기술 개발, 공동 부품 조달, 공동 마케팅 등에 의한 전략적 제휴 증대 등 역내 기업 간 자체

생존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서 RCA가 가장 높은 분야는 통신, 반도체 등 IT산업, 철강, 전기 및 전자와 자동차산업으로 분석되었고 중국은 가죽제품, 의류, 컴퓨터, 섬유, 통신기기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이 비교열위 또는 경합관계로 경쟁력이 약한 업종에서는 중·한 FTA 체결시 수입이 많이 늘거나 자원배분이 다른 산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자본집약형, 기술 집약형 제조업에서 대중국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중·한 FTA의 체결은 동 산업으로 자원 집중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대중 교역 및 투자 활동과 관련 자본기술 집약형 산업 및 생산 공정으로 자원이 집중되게 되고 중국의 경우, 한국 및 역외 선진국으로부터의 첨단기술 분야에 대중 직접투자와 이에 따른 대중 기술 이전의 확대가 이루어지게 된다. 양국가간 FTA는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진전시키는 효과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이익 산업과 손해 산업

중·한 FTA 체결이 되면 국내 경제적으로는 득이 클 것으로 판단되나, 이가 국내 경제의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달라, 국내 경제의 각 산업부문 별, 각 경제 활동 참여자 글로벌로는 중·한 FTA 체결에 따른 득실이 엇갈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²⁷⁾

어느 산업이 양국가간 FTA에서 이익 산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손해 산업이 될 것인지는 당해 산업의 양국가간 FTA에 예상 득실이 종합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곡물수입에 있어 중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FTA를 할 경우 한국에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중·한 양국의 농업은 소규모 영농이라는 공통점과 농업 생산물 구성이 유사한 상호 경쟁적 구조를 지니고 있는 바, 양국 FTA체결이 되면 상호 경합되는 농산물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보다 높은 국가로부터 낮은 국가로의 수출 확 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출

27) 전국경제인연합회, “한·중 FTA 주요 업종별 영향과 대응과제”, 2008.12.

확대가 이루어질고 한국농업에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곡물, 수산물, 채소류 등은 중국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민감 품목으로 분류되며 FTA를 할 경우 동 품목들에 충격이 예상된다. 의류, 목재가구, 기타 운송설비, 기타 제조업과 같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에서는 생산규모가 축소되어 산업의 구조조성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기업들이 중국보다 기술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자본 및 기술부문에 있어서 고부가가치 제품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종합적인 경쟁력이 중국보다 우수하므로 FTA체결이 되면 대부분의 중국 제조업종에 충격과 불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라. 무역 투자 증대

중·한 양국 간 FTA 체결은 두 나라의 무역을 확대시키고, 역내 기업의 투자 증가와 역내 외국인투자 증대 등 역내 투자를 활성화하며, 역내 외국인투자 확대에 따른 역내 외국인투자 유치국으로의 기술 이전 촉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역내 무역장벽의 철폐는 기업의 역내 경제활동비용이 낮아짐을 의미하며, 그 자체로서 기업 의 이윤창출 기회가 확대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역내 판매활동에 있어서도 운송, 정보비용 절감 및 무관세혜택 등으로 기업의 제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장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FTA는 역외기업의 역내로의 투자를 증가시키게 된다. 특히, 역외국가에게는 역내에 생산거점을 확보할 경우 FTA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역내무관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내 해외직접투자 추진에 강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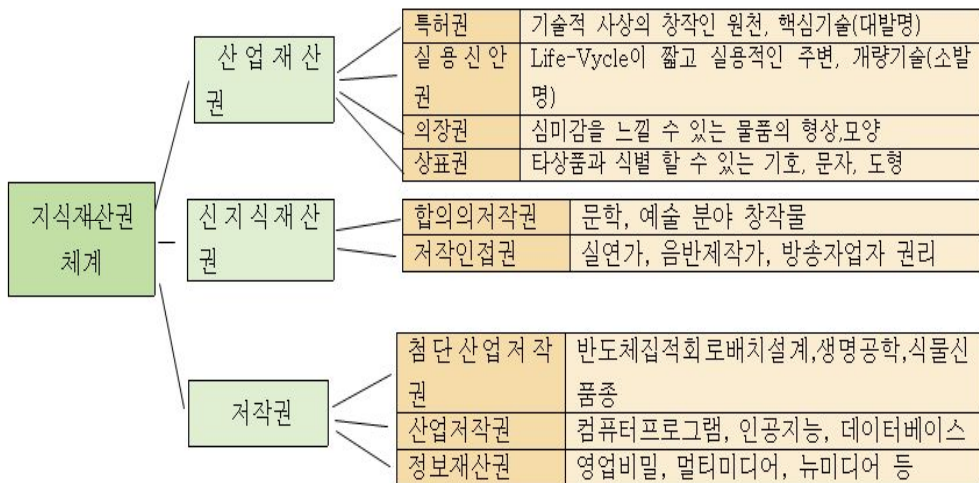
제2절 중·한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1. 지식재산권의 정의

지식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설립협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산업디자인, 등록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및 기타 명칭, 부당경쟁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²⁸⁾

<표 2> 지식재산권의 분류



28) 이 정의는 WIPO 설치협약 제2조 7항에 따른 것이다.

오늘날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창의적 정신활동으로 창출된 지식재산 권리를 보호하고, 전통적인 산업발전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을 <표 2>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은 산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새로 창안된 상품이나 기술에 부여되는 권리로 여기에는 특허권(patent),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의장권(industrial design) 및 상표권(trademark)이 있다. 저작권(copyright)은 학문이나 예술에 관련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저작권의 대상은 인간의 모든 정신적 창작물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음반, 테이프, 그림, 조각물, 사진, 필름, 악보, 컴퓨터 프로그램, 광고문안, 출판, 번역, 복제, 공연, 연주, 전시 및 기타 학술이나 예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물품들이 해당된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저작자의 인격적 보호를 위한 저작인격권(moral right) 그리고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으로 구분된다. 신지식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은 첨단과학과 정보산업의 발전으로 기존의 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을 의미하며, 산업저작권(industrial copyright), 첨단산업재산권(high technological property), 정보재산권(proprietary information),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 System)등이 있다.²⁹⁾ 이상과 같이 다자주의는 국제협약 및 WTO 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분류하여 권리 보장하여 왔다.

2.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현재 글로벌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국내든 국외든 지식재산권 논쟁과 분쟁이 갈수록 많아져 있다. 지식재산권은 개인이나 집단이 과학, 기술, 문학예술분야에서 창조한 정신적 자산이 법에 따라 지니는 전유권이다.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재산권이다. 글로벌 과학기술, 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객체 범위와 내용은 점점 확대하고 심화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 법률 제도와 이론연구

29) 지식재산권 분류에 관한 내용을 다음의 참고 문헌에서 인용하였다. 이신규(2011) 『국제통상론』 (서울: 두남), pp.354-356.

에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개념은 지식재산권의 입법, 사법 실천, 이론 연구의 기초이자 꼭 명확한 문제이다.

국제경제, 문화교류의 발전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지역성은 전대미문의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지식재산권 법률관계도 날수록 국제화가 되며 주체, 객체와 내용은 대량의 대외요소가 포함된다. 지식재산권 법률관계의 주체는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권리를 지니고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일컫고 개인, 단체, 법인, 협력자 등을 포함한다. 국제 교류 측면을 보면 내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및 내국인이 외국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향유하는 현상이 매우 보편하다. 지식재산권 법률관계의 객체는 지식재산권관계에서 주체간의 권리 및 의무가 가리키는 대상이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 그 까닭은 지식재산권 보호가 과학과 기술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과연 순기능적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초기의 논의는 주로 법철학적 연구로부터 비롯되었다. 앵글로-색슨계의 로크주의적 노동가치설이나 대륙계의 헤겔주의적 인성이론이 인간의 지식생산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합리화하는 철학적 기초였다. 노동가치설에 따르면 인간의 지식창조물은 노동의 산물이고 따라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창작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반면 인성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지식창작물은 창작자의 인성 혹은 자아의 자기 실현이므로 창작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았다.

이와 같은 초기의 논의는 사회적 관점을 도외시한 자연법적 논리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나 19세기에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지식재산권 소유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해 오히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물론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주장이 강해 지식재산권을 부정하는 기류가 형성되었다. 이 여파로 인해 19세기 중엽에는 특허권 폐지론까지 대두되기에 이르러 지식재산권이 사실상 절대 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소위 이러한 반 특허운동은 자유무역운동에 힘입어 인위적인 독점을 반대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1850~1873년까지 유럽지역에서 일어났다. 이 운동으로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50년간 특허제도를 폐지 또는 극히 초보적인

수준의 특허제도만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세기말 공리주의적 견해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합리화하는 주장과 이후 일어난 공황과 이에 수반된 보호무역주의 및 민족주의 대두로 반 특허운동은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

사실 반 특허운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지식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면 발명활동과 창작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고 지적활동이 성행한다하더라도 비밀로 유지될 수 있는 분야의 발명이나 창작에 집중되어서 과학과 기술발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특성상 발명이나 창작하는데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는 반면 이를 복제하거나 모방하는데 또는 생산하는 데는 적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비용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발명과 창작을 한 지식재산권 소유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지 못하는 부조리를 낳게 된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보호는 발명과 창작을 적극 유인하고 장려한다는 것과 배타적인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많은 발명과 창작물이 공개되고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문, 기술, 과학 그리고 문예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으면서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³⁰⁾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각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도덕적, 경제적 권리와 그 창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의 권리에 법률적 자격을 부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의도적인 정부정책의 한 형태로서 창작활동과 그로 인간 결과물의 보급 및 이용을 증진시키고 공정한 무역을 장려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³¹⁾

30) Richard A. Posner.(1977) Economic Analysis of Law(Boston, Brown and Company), p.54.
 31) 李亨杓(2005.6) 『知識財産權의 法的 保護와 그 限界에 관한 研究』 韓南大學校 行政政策大學院 特許法務學專攻 석사논문.

3. 한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보호 현황

가. 지식재산권 보호사업의 기본상황

(1)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한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한때 주요 선진국들에 의해 ‘지식재산권 침해국가’로 인식되었으나,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및 한국 제품의 품질 향상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으로 중국, 동남아 등 해외에서의 한국제품의 피해사례 급증으로 ‘지식재산권 피침해국’으로 전환하였다.

한국 제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는 피해 발생지역에 따라 국내시장에서의 피해와 해외시장에서의 피해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해외시장에서의 피해는 ① 현지에서 생산된 모조품, ② 현지에서 생산되어 제3국으로 수출되는 모조품, ③ 환적, 원산지 위·변조 등을 통해 제3국으로 수출된 모조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으며, 국내시장에서의 피해는 ① 해외에서 생산·수입된 모조품, ② 환적, 원산지표시 위·변조를 통해 유입되는 모조품, ③ 해외에서 생산, 제3국을 거쳐 유입되는 모조품 등으로 인한 피해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 방지를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 법령은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2) 집행 기구

현대 산업재산권 관리는 가장 일찍 1946년 한국에 출현하였으며 당시 무역, 공업과 에너지원 부서는 특허청을 설립하였으며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하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³²⁾

한국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관련 행정부서는 다음 <표 3>과 같이 문화체육관광

32) 한국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제37조 제5항에 근거).

부(주로 저작권 보호 및 관련 사항을 책임짐), 정보통신부(주로 계산기 소프트웨어) 및 그 아래 설치된 각 심사 중재위원회, 특허청에 설치된 특허 재판원 등을 포함한다. 사법, 집행부문에는 특허법원, 법원, 검찰청, 경찰청이 있다. 이외에도 세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역시 지식재산권의 직책을 담당하며 부문 행정 집행권을 구비하고 있다.

한국의 상표, 특허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며 법원은 상표등록, 특허 보호 및 처리 조치 방면에서 중국과 비슷하며 민사제재와 형사제재권이 있다. 이와 다른 점은 한국 특허청은 가짜 상표, 특허제품의 행정 조사권만 있으며 행정집행권은 없다. 특허청의 주요 직책은 상표권과 특허권이다.

한국 검찰기관과 경찰은 공동으로 가짜 상품 및 그 제조자와 판매자를 조사하여 사회 안정과 정상적인 무역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조사 처리 활동을 집행할 수 있다. 한국 특허청이 가짜 상표 등 부당한 경쟁 행위에 대해 행정 조사권만 있으므로 만일 강제적 조치가 필요하면 반드시 검찰, 경찰 부문과 연합하여 집행해야 한다.

1993년 한국 대검찰청에서 설립한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조사센터”는 전국 26개 주요 지방청과 분청을 설립하여 “지역연합수사대”를 형성하였으며 검찰기관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기구를 건립하였다. 권리 침해 범죄를 조사하는 전문 검찰관을 파견하여 이 부서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한국 대검찰청에서는 정기적으로 “지식재산권침해 조사지도협의회”를 소집하였으며 검찰청, 외교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경찰청, 국세청, 세관, 특허청 8개 부서를 연합하여 조직하였으며 매년 정기회를 소집하여 권리침해 행위 효과를 분석하고 연구한다.

세관 본부 및 지방 세관에 모두 전문 조사반을 설립하였고 관세법에 의거하여 감시하고 가짜 상품의 수출입 통관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권리침해 혐의 상품은 통관시 각 세관이 일시 화물을 압류하여 침해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며 침해 화물을 몰수하는 등 부분 집행권이 있다. 세관 홈페이지에는 “진품, 가짜 전시회”를 개설하여 국민들이 침해 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으며,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수출입 상품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을 때 상표권 소유자는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침해물품의 통관이 보류되게 된다. 세관이 상표권자의 요청을 받았을 시 특수한 원인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침해물품을 통관을 보류해야 한다. 만약 수출입 상품이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에 요구할 시 세관은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관련 상세한 규정은 대통령이 제정하여 공포한 것이다. 세관법 저작권도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

이외 특허청은 지방 자치단체에 가짜 상품 취소를 명하는 권리가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검찰, 경찰, 특허청은 연합하여 가짜 상품 취소를 명하는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홍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3> 한국의 정부기관별 지식재산권 보호 역할 분담

구분	부 처	기능·역할
해외시장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조품 등 지재권 침해 피해 대응 총괄 · 해외시장에서의 지재권 보호 총괄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간 협력 추진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간 협력 지원 · 재외공관에 지식재산권보호 담당관 지정
국경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로부터의 모조품 반입 단속 · 국내생산 모조품 해외 반출 단속 · 모조품 환적, 원산지 위·변조 단속 * 원산지 위·변조 제품의 국내유통을 추적·단속할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 개정 추진 중
국내시장	국무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총괄 · ‘지식재산권보호 정책협의회’ 운영
	무역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
	특허청, 검찰·경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위반행위 단속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저작권, SW 등)

나. 지식재산권 해외 보호조치 집행기구

(1)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한국 특허청은 산업재산권을 적기에 보호함으로써 산업기술 개발의 촉진을 지원하고, 산업재산권 행정의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1949년 설립되었다.

특허청 주요 기능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 ② 기술적 창작물에 대한 심사 및 특허권 부여,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발명진흥 시책 수립·시행, ③ 특허권 등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검토·개정 운영, 특허쟁송과 관련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특허심판제도 운영, ④ 특허 심사적체를 해소하고, 특허기술정보를 산업계에 확산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행정정보화 추진, ⑤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수행하여 산업재산권 국제화 추진, ⑥ 위조상품의 제조·유통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단속·홍보 및 위조상품 추방활동 수행, ⑦ 심사·심판관 등 특허전문요원의 자질향상과 선진국 산업재산권 제도의 조사·연구를 위한 전문연수기관을 설립,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기업의 특허전담인력 교육, ⑧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생명공학, 캐릭터, 활자체, 입체·소리·냄새상표, TRADE DRESS 등의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입법추진, 권리화, 국제적 보호 및 다자간 협력체제 구축활동 수행 등이다.

(2) 관세청의 지식재산권보호

세관은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를 기만하여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불공정 무역행위인 상표권 등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다³³⁾. 또한 관세법에 의한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물품의 통관보류 외에 『사범 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출입관련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수사권이 세관 공무원에게 부여되어 있어 상표권, 저작권 침해사건은 물론 특허권 등 수출입 관련 기타 지식재

33) 관세법 제235조

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상표법 등 개별법 위반으로 조사하여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관세법에 의하여 통관이 불허됨은 물론 상표법 등 각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②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③ 저작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품종보호권 및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31조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⑤ 지리적표시품의 허위·유사표시 등을 한 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9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특허법 제22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⑥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디자인보호법 제82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⑦ 상표법,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한자는 관련법위반으로 세관에 의하여 조사·처벌 받게 된다.³⁴⁾

(3)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해외 진출한 한국기업의 안정적 사업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지식재산권 인식제고, 권리확보 및 분쟁대응 등을 지원하는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중국(북경, 상해, 청도, 광주, 심양), 미국(뉴욕, LA), 베트남(호치민), 태국(방콕), 독일(프랑프푸르트)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³⁵⁾

해외 IP-DESK는 상표출원절차, 권리확보, 분쟁대응 등 지식재산권관련 상담, 지식재산권 침해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지식재산권 관련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이슈와 정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권리확보를 위한 상표 및 디자인 출원에 대해 1개사당 4건(소요비용의 50%) 지원,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 피침해조사비용(최대 70%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3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호.

35) 한국 특허청(<http://www.kipo.go.kr>) 및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https://www.kipra.or.kr>) 홈페이지 참고.

(4) 한국무역협회 수출상품모조종합대응센터

한국무역협회는 8.5만개 회원 회사로 구성된 민간 경제단체이다. 1946년 한국 무역협회가 성립된 이후, 계속 무역증개, 수출상품의 해외 선전, 회원회사를 도와 어려움 극복, 조사연구 및 정부에 건의 제출 등 각 무역 촉진활동에 종사하였다. 회원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무역협회는 2006년 7월에 수출상품모조 종합대응센터(Counterfeit Combat Center for Korean Exports, CCC Korea)를 설립하였다.³⁶⁾

이 센터의 주요한 업무는 모조품 피해사례 접수 및 대응상담과 함께 중소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피해예방 및 대응지원, 무엇보다도 현지 단속전문 에이전트 고용을 통한 현지단속, 중소 수출업체를 위한 현지법률가 동원 민·형사 소송대행 등 법률지원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원 및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피해를 당하고도 실질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많은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동 센터는 모조품 피해 발생사례 접수시점부터 피해대응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5)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세계 각국 간의 FTA 체결 등 글로벌시대의 국가 간 교역의 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국제무역 상황에서 기업의 지식재산권보호와 짝퉁물품 등 유·무형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는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rade Related IPR Protection Association:TIPA)는 2006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한국 관세청(세관 본부) 아래의 비영리 사단법인 성격의 민간단체이며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³⁷⁾

TIPA 설립이후 관세청과의 연계시스템을 통한 지식재산권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통관 단계에서의 다양한 지식재산권보호 및 피해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조사,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무용기기 협회, 음반협회 등 8개의 유관

36) 한국무역협회, “해외시장에서 모조품으로 인한 피해 본격 대응 나서, 보도자료, 2006.7.5

37) 사단법인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http://www.e-tipa.org>) 참조

기관으로 구성된 ‘범국민 지식재산권보호연합회’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법 피해 상황 등에 무감각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이벤트도 수행하고 있다.

다. 한국의 FTA별 지식재산권 협상 주요내용

지식재산권 보호는 각국의 국내산업 및 문화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 보호형태와 정도에 차이가 존재한다. FTA를 통한 무역체제의 개방과 함께 국제적인 경제활동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상이한 지식재산권 보호체제로 인한 지식재산권 관련 통상문제가 빈번해지면서 지식재산권의 조화(harmonization)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³⁸⁾ 한국에서의 FTA별 지식재산권 협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한국의 FTA별 지식재산권 협상 주요내용

구 분	지식재산권 협상 주요내용
한·칠레 FTA (‘04.4.1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칠레가 우리나라의 인삼, 김치, 보성녹차를 지리적 표시로 보호기로 합의 - 한국은 Pisco, Pajareto, Vino Asoleado 3가지 칠레산 지리적 표시에 대해 독점권 부여 (Pisco의 경우는 페루에 대해서도 인정 가능성 열어 둠)
한·싱가포르 FTA (‘06.3.2.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IPS 협정에 따른 지재권 보호의무 규정 - 한국 특허청을 싱가포르 PCT 국제출원에 대한 ISA(*1)/IPEA(*2) 지정 - 한국 특허에 대한 싱가포르내 무심사 등록 - 양국간 지재권 공동위원회 설치
한·EFTA(*3) (‘05.7.12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년까지 로마협약 등 3개 국제조약에 가입 및 준수 - 지리적 표시의 보호 - 미공개 정보(undisclosed information)의 보호
한·ASEAN FTA (‘06.7.1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재권 보호 강화 - 지재권 분야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 별도의 지재권 챕터 없이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상의 경제협력 분야에 지식재산 분야 협력사항을 포함

38) 조미진, 엄부영, 박현정, 「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점검」,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7-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12.24. p.11.

한·인도 CEPA(*4) (‘10.11.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IPS 협정 준수 재확인 - 지재권 분야의 다양한 협력사항(PCT ISA/IPEA, 선행기술 공동조사, 지재권 라이선싱 정보교환 등) 규정 - 양국 특허청 간 MoU 체결을 통한 협력 도모
한·EU FTA (‘11.7.1 잠정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표시의 협정부속서 상 List 방식으로 보호 (EU 162: 한국 64) (기존 선행 상표의 계속 보호) - 상표의 배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으로 한정 -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 및 자료 독점은 기존 제도 유지 - 통관보류 적용 대상을 기존의 ‘상표권, 저작권 및 저작권인권 침해상품’에서 ‘특허, 디자인, 지리적표시, 식물신품종권 침해상품’까지 확대
한·페루 FTA (‘11.8.1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I는 부속서 교환방식으로 보호 - 유전자원(GR)/전통지식(TK)은 CBD Text의 선언적 내용 등으로 타결
한·미 FTA (‘12.3.15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 - 공지의외 적용기간 12개월 연장 - 소리·냄새상표 인정 및 증명표장제도 도입 - 상표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 지재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권한 강화
한·터키 FTA (‘13.5.1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I는 부속서 교환방식으로 보호, 향후 추가 가능 - 유명상표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및 TRIPS 의무 준수
한·콜롬비아 FTA (‘13.2.21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냄새 상표등 비시각적 상표 보호 - 상표권, 저작권 침해 의심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등
한·캐나다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년 제13차 협상에서 지재권 분야 협정문의 타결이후‘12년 협상이 재개되면서 한국측의 높아진 지재권 보호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협정문 수정 작업이 진행중에 있음
한·중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10. 제4차 협상에서 지재권 분야의 독립챕터 구성에 합의 - ‘13.4. 제5차 협상에 협상 지침으로서의 모델리티 문안에 대하여 논의 - ‘14.11.협상타결 - ‘15.6 협정문 서명
한·인도네시아 CE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7. 제1차 협상 및 ‘12. 12. 제2차 협상 개최 - ‘13년 상반기중 제3차 협상 개최 예정이며, 지재권 분야의 경우 별도 작업반을 통해 구체적인 협정문 내용에 대하여 논의 추진
한·베트남 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9. 제1차 협상 개최 - ‘15.12. 협상타결 - ‘15.5. 협정문 정식서명 -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에서 WTO 지재권 협정 이상의 보호를 확보하고 권리 침해에 대해 유효한 구제 장치 마련
한·중·일 FTA 및 RCEP(*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5 제7차 수석대표협상 개최, 지재권 분야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논의 추진

라. 지식재산권 보호사업의 경험 참고

경쟁력과 부가가치의 창출 원천이 지식재산으로 변화하면서 기업의 지식재산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지식재산 창출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원천기술보다 기업을 중심으로 개량기술 위주로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져 지식재산권 수지가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지식재산을 사업화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이익 창출도 미흡하며, 또한 제도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수준이 낮은 실정이다.³⁹⁾

국제 특허인 삼극특허는⁴⁰⁾ 2011년 1,709건, PCT 특허는⁴¹⁾ 출원 2012년 11,846건 건수는 세계 5위 수준이며, 산업재산권의 출원은 특허를 중심으로 증가 추세이지만 2000~2012년동안 연평균 2.9% 증가에 그쳐 연구개발투자에 비해 정체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을 중심으로⁴²⁾ 개량기술 위주로 이루어져 원천기술과 표준특허 확보가 미흡하며, IT 산업 비중 확대 등으로 지식재산권 수지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중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공정개선에 활용하거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타 기관에 이전하는 사업화율은 57.1%, 전략적 목적을 포함한 활용율은 76.1% 수준이며, 공공연구기관에서 이전된 기술이 기업에서 활용되지 않은 경우는 36.8%(기술이전 계약 건수 기준), 보유하고 있는 특허 가운데 미활용률은 23.7%에 달하고 있다. 기업이 산업재산권을 사업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문인력과 자금이 부족하고 기술을 공급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업을 찾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분쟁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기술진보가 빠르고 다수의 기술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IT 분야에서 분쟁이 두드러지

39) 조정환, “우리나라 지식재산활동의 현황과 과제”, 이슈브리프 제3권 제52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13.12.31. p.10-14.

40) 삼극특허는 미국 특허청(USPTO), 일본 특허청(JPO), 유럽 특허청(EPO)에 모두 등록되어 있는 특허를 의미한다.

41) 자국 특허청에 PCT 특허를 출원(국제출원)하면 조약규정에 따라 출원인이 지정한 나라의 특허청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부여함.

42) 2012년에 총 연구개발비 대비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77.9%를 차지하여 주요국 보다 높은 상황: 일본(77.0%), 미국(68.3%), 독일(67.3%), 프랑스(63.4%).

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⁴³⁾ 심사의 품질이 낮아 지식재산 권리의 유효성이 낮으며, 손해배상액이 낮아 경쟁사의 무분별한 특허 소송에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기초·응용기술은 성공 가능성이 낮고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투자 위험이 높으므로 한국은 기초·응용기술 부문에서 일반기업보다는 정부·공공재원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 초기부터 사업화로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고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와 금융지원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4.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및 보호 현황⁴⁴⁾

가. 개황

당중앙위원회 제11기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후인 1979년에 중국의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 3부의 법률을 동시에 기안하였다. 1979년의 형법중 타인이 등록한 상표를 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상표는 이 때부터 전용권을 부여하였으며 형법중에서 출현한 민사권리가 되었다.⁴⁵⁾

중국은 1982년에 상표법(1993년 2월과 현재 두 번 수정함)을 반포하였고 1984년에 특허법(1992년 9월과 2000년 8월에 2번 수정함)을 반포하였으며 1986년에 민법통칙을 반포하였다. 그 중에 지식재산권을 보호에 대해 정확하게 규정하였다. 1990년에 중국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을 반포하였으며 1991년 6월에 국무원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항을 반포하였다. 1993년 9월에 부정경쟁방지법을 반포하였으며 명문으로 상업기밀 보호를 시작하였다. 1997년 3월 국무원은 식물 신품종 보호조항을 반포하였다. 이 몇 부의 단행 법률과 행정법규를 제외하고 중국은 1997년 수정한 형법에는 특별 조항을 열거하였고 상표권, 저작권을 침범하며, 상업기밀을 침해하고 특허자로 사칭한 사람에게 형사제재를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체계 중 기본법률, 법규는 이미 구비되어 있다.

43) 국제경쟁개발원(IMD)에 따르면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는 5.99(10점 만점)로 OECD 평균(7.09)보다 낮고 30개국 가운데 24위로 나타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4) 鄭成思, 『知識產權法律制度』 九屆全國人大常委會法制講座第十九講.

45) 중국 형법은 비교적 발달하였지만 민법은 발달하지 못한 오랜 역사과정에서 많은 민사권리는 형법에 의거하여 형성되었으며 형법의 보호를 받는다.

나. 몇 부작 주요 법률에 대한 설명

중국의 상표법은 주로 상표권을 등록한 사람의 전용권을 보호한다. 1993년부터 이러한 보호에는 상품 상표와 서비스 상표를 포함하였다. 비록 상표법의 주요한 목적은 상표를 등록한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이 목적은 우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통하여 실현한다. 이 점에서 상표법, 소비자권익보호법과 부정경쟁 방지법은 교차적이다. 그 이유는 이 3부 법은 모두 주로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의 유통을 규범화 하였다. 상표법의 집행과정 중에 공상 관리부서 혹은 법원이 모 경영자가 타인의 상표 전용권을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자면 주로 그는 상표를 사용하는 방식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를 오도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즉,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지를 사용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중국 특허법은 발명, 실용신안과 외관 설계의 3가지 다른 특허권을 보호하며 중점은 발명특허의 보호이다.

중국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상표권, 특허권 이 2가지 행정기준에 의거하여 형성된 지식재산권에 대해 이 2부의 법률 중 모두 행정기관의 조정, 권리 침해 분쟁 처리 및 행정기관의 일부 위법활동 직책의 조사처리를 규정하였다. 많은 외국 법률 및 세계 무역 조직의 지식재산권 협의는 이러한 행정 집행을 허가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규정은 국제관례와 일치한다.

중국의 저작권법은 우선 문자 저작을 보호하지만 “저작”에만 그치지 않는다. 음악, 무용, 영화, 텔레비전, 공정설계, 지도, 컴퓨터 소프트웨어, 배우의 공연 실황 등을 포함하며 복제할 수 있는 “복합적 버전”, “복제판” 또는 “해적판”의 지적 창작성도 전부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종이, 테이프, 영화 필름 등 형식으로 작품에 대해 복제하는 것은 매개체가 있는 복제에 속하고 공연 등 형식으로 작품에 대해 복제하는 것은 매개체가 없는 복제에 속한다. 그리하여 국제조약 및 많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보호하는 법률을 모두 “저작권법”이라 부른다. 중국 법률 중에서 저작권(著作權)과 저작권(版權)은 동일한 뜻이다. 법률적으로 출판, 전파를 금지한 작품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독창성”과 “첫 창작성”(즉, 특허법에서 말하는 신규성)은

차이점이 있다. 창작 효과는 저작권 보호가 있는 우선적인 조건인 “독창성”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표절하고 복제한 것 혹은 기타 방식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며 이는 반드시 작가가 창작한 것 이어야 한다. “독창성”과 “첫 창작성”은 요구사항은 다르다. “독창성”은 창작에서의 “우연히 일치한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갑과 을 두 사람이 각기 동일한 각도에서 만리장성을 촬영했을 때 비록 갑이 먼저 촬영하고 을이 뒤에 촬영하여 두 장의 촬영 작품이 아주 비슷하지만 두 사람은 각기 자신의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다. 만약 을이 자신이 만리장성에 가서 촬영하지 않고 갑의 촬영 작품을 복제하면 이는 “표절”에 속하며 자신의 저작권을 소유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가 각자 독립 창작의 동일한 작품을 배제하지 않기에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은 저작권 분쟁을 해결할 때 침해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허 및 상표 영역에 비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허가 있는 발명은 “첫 창작성”을 구비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특허제도는 개발 중의 “우연함”을 배제한다. 만약 갑이 먼저 특허를 신청하고 동일한 발명에 대해 을이 나중에 신청하면 을이 갑의 개발과정에 대해 접촉한 적이 없고 완전히 자신이 독립적으로 생각해낸 발명이라고도 해도 을은 특허를 획득할 수 없다. 이는 중국의 《특허법》 중 “신규성”요구와 “우선 신청”원칙을 말한다. 동일한 기술 영역에서 발명한 사람이 많지만 다른 사람이 동일한 발명으로 특허를 신청하였을 시 특허 심사 기관은 누가 먼저 발명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법에 근거하여 누가 먼저 신청한 것이 접수 되었는지를 확인하며 기타는 모두 배제한다. 그래서 중국 기업 혹은 연구 회사에서는 일단 새로운 발명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타인이 나에 의존하지 않고도 짧은 시간 내에 동일한 기술방안을 개발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일찍 특허 신청을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먼저 신청하여 자기가 시장 밖에 배제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우리 연구 성과는 새로운 과학 발견에 속하며 동업 심지어 전 세계가 “우선 발견권”의 확인을 획득하며 빨리 미디어에 밝혀 선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개발 혹은 연구한 성과가 실용적 발명(즉, 새로운 기술방안)에 속할 시 우리는 우선 특허신청을 통한 시장점유를 고려해야 한다. 이 때 만약 미디어에 공개

를 서두르면 특허 신청방면에서 우선권을 빼앗길 수 있어 자신의 신규성을 망칠 수 있으니 타당하지 못하다.

등록하여 상표권 마크를 소유하는 것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식별력”을 구비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만약 “우유”를 봉지 포장 우유 상품의 상표로 한다면 소비자는 이러한 봉지 포장 우유와 기타 공장에서 생산한 봉지 포장 우유를 구분할 수 없기에 식별력이 없다. “삼원”, “멍니우”, “파르마라트”등의 이러한 마크들은 식별력이 있기에 다른 공장에서의 동일한 상품과 구별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상표의 주요한 기능이다.

그 외에 강조할 문제는 중국에서 몇 부 지식재산권 방면 법률을 반포한 후 상당히 긴 시간 내 많은 사람들이 상표에 대한 관심도가 기타 지식재산권에 비해 훨씬 낮다. 이론적으로 보면 일부 사람은 상표는 오직 표시 작용만 있다고 생각하며 지적재산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천 중 어떤 사람은 유명 상표는 첨단 기술 산업의 일일 뿐이며 초급제품(광석, 양식 등) 경영에는 상표가 아예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점이다.

1980년부터 중국은 이미 연이어 세계 지적재산권 조직 공약, 공업 재산권 보호 파리 공약, 문학예술작품 보호 베른 공약, 세계 저작권 공약 등 주요 지식재산권 국제 공약에 가입하였다. 중국의 입법 방면이든 지식재산권 국제 보호 대외 협력 방면이든 중국은 발전 중 국가로서 전진하는 속도는 아주 빠르다. 연합국 세계 지적재산권 조직의 전 사무총장과 현임 사무총장은 중국이 십여 년 짧은 시간 동안 발달한 국가가 수백 년 거쳐야 도착할 수 있는 길을 걸었다고 하였다.

물론 현대 지식재산권 법률제도 건립 시간이 길지 않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은 낙관적이 못해서 더욱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 중국 해관의 지식재산권 보호현황

중국 해관 총서는“2014년 중국 세관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발표에서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주요 이동경로로 국제우편과 해운을 지적, 수출입 국제우편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2만 여건의 화물을 적발하였는데, 이는 전체 압수 화물의 80.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운을 통해 8,900만 여건을 적발, 전체 압수 상품의 96.3%를 차지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⁴⁶⁾

중국 해관에서 압수한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특징을 살펴 보면, 첫째, 세관의 직권 보호조치가 대부분이다. 직권 보호조치로 적발한 화물은 2만 3천여 건으로 9천여만 건의 상품에 달하며 전체 압수 화물과 상품에서 각각 99.9%, 98%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상표 침해가 대부분이다. 상표침해 화물이 8,900만 여건으로 전체 압수 상품의 96.9%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품 중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화물은 2만 3천여건으로 전체 압수 화물의 96.5%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대비 의료기기, 담배, 액세서리, 화장품 등이 대폭 증가 하였으며 약품, 통신장비, 완구, 식음료는 감소세로 나타났다. 넷째, 지역의 다변화이다. 해관에서 압수한 침해품은 153개 국가 및 지역과 관련 있으며, 중동, 아프리카, 남미지역의 침해품 증가가 두드러졌다. 다섯째, 해관의 적극적 대처이다. 중국 42개 직속 세관 관할지역 중 33개 세관에서 침해품을 적발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세관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46) 지재권분쟁보호센터, “중, 14년 세관 지재권 보호 현황”, 지재권뉴스, 2015.5.25.

제 3 장 중·한 FTA의 지식재산권 협상 이슈 점검

제1절 상표권 분야

1. 상표권의 의의

한국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종류와 관리기관으로 다음 <표 5>와 같이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하고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으로, 저작권은 협의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신지식재산권은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및 기타 영역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표 5> 한국의 지식재산권 종류와 관리기관

권리유형		보호대상	관련법	관리기관	
전통적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발명	특허법	특허청
		실용신안권	실용성 있는 개량기술	실용신안법	특허청
		디자인권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창작	디자인법	특허청
		상표권	타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문자,	상표법	특허청
	저작권	협의의 저작권	문학, 예술적 저작물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인접권	실연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권리		
신지식재산권	협의를 신지식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반도체배치설계, 생명공학, 식물신품종	반도체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특허청, 농림수산식품부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특허청 지식경제부
		정보재산권	멀티미디어,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청
	기타영역	지리적표시	특정상품이 생산되는 지역명칭	상표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특허청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캐릭터, 프렌차이징, 인터넷도메인, 색채상표, 입체상표, 디자인권의 보호대상 확대, 맛, 소리, 냄새 등			

자료 : 조미진·엄부영·박현정(2007.12.24) 『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점검』, 무역투자연

구 시리즈 07-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26.

한편, 중국에서는 지식재산권¹¹과 관리기관으로 다음 <표 6>와 같이 산업재산권, 저작권, 기타 권리로 나뉜다. 한국에서는 산업재산권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구분되지만 중국에서는 발명특허, 실용신형특허, 외관설계특허, 상표로 구분하고 있다.

<표 6> 중국의 지식재산권 종류와 관리기관

권리유형		보호대상	관련법	담당 행정기관
산업 재산권	전리권	발명	전리법	국가지식산업국
		제품의 형상, 구조 및 그 결합에 대해 제출한 실용적인 새로운 기술		
	제품의 형상, 도안, 색채 등 미적 감각을 주며 공업에 응용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상표권	상표, 지리표시, 서비스표, 증명상표, 단체표장	상표법	상표국	
저작권		문학제품, 촬영작품, 공정설계도, 제품설계도, 지도 등 도형작품, 모형작품,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법	국가판권국
기타 권리	영업비밀	노하우, Client 정보	부정당 경쟁방지법	국가공상행정관 리 총국
	반도체집적 회로 배치설계권	반도체지적회로	반도체집적 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	국가지식산업국
	식물육종권	식물신품종	식물신품종 보호조례	국가농업부

자료 : 조미진·엄부영·박현정(2007.12.24) 『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점검』, 무역투자 연구시리즈 07-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32.

중·한 FTA 지식재산권 협상중 상표권에 대한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표권(商標權)이란 상표신청등록인이 상표주관기관의 비준과 등록을 통해 상표를 이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의 취득(全有權)을 가리킨다. 상표권 또는 상표전용권은 국가상표관리기구가 관련법률 규정의 순서에 의거해 그 비준과 등록을 거쳐 상표소유인에게 일종의 배타적인 법률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국가의 강력한 보호를 받는다.⁴⁷⁾ 중국의 <商標法> 제3조 규정을 살펴보면 상표국의 허가를 받아 등록된 상표를 등록상표라 하며 여기에는 상품상표(商品商標), 서비스상표(服務商標), 단체상표(集體商標), 증명상표(證明商標)를 포함하고 있다. 상표등록인은 상표전용권을 향유할 수 있으며 상표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되어 있다.

상표권은 지식재산권의 범주에 속하고, 지식재산권의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전용성(全用性), 시간성(時間性), 지역성(地域性) 등의 특징을 가진다. 상표권의 전용성은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표권의 시간성은 상표에 대한 권리는 시간적으로 유한한 권리로, 일정한 기간 동안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상표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표권은 영구적인 특성을 지닌 지식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상표의 지역성은 등록국 범위 내에서만이 그 나라의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상표의 경제적 가치

오늘날 상표는 단순히 상품을 표시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거나 다른 회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의 구별하는 기능을 하는 등 그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또한, 상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표시 기능에 벗어나 다른 상표나 서비스, 다른 회사의 상품에 사용되어 그 수익을 확장하게 되어 그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상표의 경제적 가치는 유명 브랜드나 상표를 보유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의 사례에서 엿볼 수 있다. New Stream Capital는 미국 Connecticut 주 Ridgefield에 소재한 사모펀드이면서 자체적으로 상업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대출상품 중에는 지식재산에 기초한 상품도 포함되어 있다. 동사가 상표를

47) 越國(2002) 『知識產權犯罪調查與研究』中國檢察出版社, p.14.

기초로 대출을 실행한 대표적인 사례로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첫째, Pennsylvania주 Berwick에 소재한 스낵 제조업체에 대하여 보유 브랜드명, 상표 및 특허를 기초로 미화 980만 달러의 대출을 실시한 바가 있고, 둘째, California주 Huntington Beach에 소재한 의류회사에 대해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과 더불어 보유 상표를 기초로 미화 500만 달러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상표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만드는 차별성은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가능한 모든 지원 방법들을 확보하는데 있다. 이외에도, 상표에 관련해서 마케팅을 펼쳐나갈 때 단순히 상업광고에만 치중하지 않고, 공익사업을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이다. 나아가 제3자에게 라이선스 허가 등 가능한 모든 수익창출 방안들을 확보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점들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상표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무용지물이 될 위험성이 있다. 또한, 상표는 적절한 주의를 갖고 관리를 해 나가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직접 부착하거나 사용되지 않은 상표들의 경우 실제로 상품으로서 유통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표 자체만으로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상표를 기반으로 수익을 내려면 당해 상표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기울여야 한다.

3. 중·한 양국간 상표권에 관한 이슈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에서의 상표출원 및 등록신청이 활발한 편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중국에서 한국의 상표등록 신청건수는 3,219건(중국 내 신청 3,137건과 마드리드 신청 82건)이었으며, 등록건수는 1,302건(중국 내 등록건수 958건과 마드리드 등록건수 74건)이었다. 상표 등록신청 건수와 등록건수의 국가별 순위에서는 각각 6위와 9위를 차지하였다.⁴⁸⁾ 상표권은 특허와 달리 기술함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타의 권리에 비해 한국 기업의 침해사태가 가장 많이 보고되고 있어, 중·한 FTA의 지식재산권 협상에 있어 상표권 분야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요

48) 마드리드 신청을 제외한 중국에서의 상표등록 신청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은 등록신청건수에서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를, 등록건수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에 이어 4위를 기록하였다.

한 이슈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49)

가. 상표권 등록의 지연

중국과 한국은 모두 ‘선(先)출원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출원된 상표는 심사관이 출원순서에 따라 등록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고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거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심사관은 출원공고 결정을 해야 한다. 이후 절차에 대해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의신청이다.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한국에서는 30일 이내, 중국에서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의신청의 결정에 통상 3년이 소요되는데다 한국과 달리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도 가능하다. 이 경우 재심절차(중국에서는 이를 복심이라고 함)를 거치게 되는데 재심에 3년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어 상표권 발생이 6~7년 정도 늦어지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상표권자의 실질적인 권리행사는 불가능하다.

이처럼 중국에서 상표심사 시 이의가 제기되고 침해자가 이의신청에 불복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상표등록(특히 신규상표 등록)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둘째, 의견제출기회의 보장이다. 한국에서는 출원결정에 대한 ‘거절’을 내리기 전 심사의견통지서를 통보하고, 기간 내에 출원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출원인은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해 심사관의 거절이유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의견제출 없이 ‘거절’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외국에서 상표를 출원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상표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출원을 하게 된다. 중국에서는 출원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상표권 등록이 거절된다면, 그 이후 조치로 인해 그만큼 상표권 등록이 지연되고 출원인은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49) 조미진·엄부영·박현정(2007.12.24) 『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점검』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7-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52.

나. 출원 중인 상표의 보호

한국에서는 출원 중인 상표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국에서 이러한 보호는 특허권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등록받지 못한 출원상표의 경우 그 등록 여부가 확정적이지 않아 상표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반면 일반적으로 상품출시와 사업 개시 즈음에 상표등록출원을 하기 때문에 등록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상표법상 제24조 제1항에 의거, 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서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고 또는 출원 공고 후 상표권을 설정 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 사용에 의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권의 관리는 등록된 이후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 초기 시장형성 과정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은 중국 측에 출원 중인 상표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규정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유명상표 보호

한국의 현행 상표법상(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는 경우 이를 거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점은 ‘국외’라는 부분으로, 국내에서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국외에서 유명하기만 하면, 그 상표는 한국에서 보호된다는 내용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유명상표(중국에서는 이를 저명상표(馳名商標)라고 함)에 대해 “중국에서 관련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비교적 높은 명성을 향유하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다.⁵⁰⁾ 이러한 개념에서 주목할 점은 저명상표의 판단 주체가 중국의 공

50) 馳名商標認定和保護規定 제2조. 한편 중국에서 저명상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정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각 기준별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저명상표의 인정기준은 ①관련공중이 해당 상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②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한 시간(상표 사용 및 등록 역사), ③해당 상표의 광고를 계속한 기간, 정도와 지리범위, 해당 상표가 주저명상표로서 보호받은 기록, ④해당 상표의 기타 저명한 요소(해당 상표를 사용한 주요상품의 최근 3년간

중(公衆), 즉 중국의 수요자라는 점이다. 이에 기초하여 해석한다면 국외에서 상표의 주지 정도에 상관없이, 중국에서 유명하면 보호하고 중국에서 유명하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된다.

따라서 중국의 유명상표 보호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유명하지만 중국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표는 보호되지 않는 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의장(디자인) 분야

1. 디자인권의 의의

산업재산권의 한 분야인 디자인권(DSIGN RIGHT)은 공업 소유권의 일종으로서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향유하는 독점적·배타적 권리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오늘날 산업재산권은 기술 및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중 디자인은 현대 기업의 경영 분야에서 핵심적인 경쟁 분야로 부각되고 있다. 좋은 디자인은 기업에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해주며 개성이 뚜렷하게 디자인 된 신제품은 경쟁상품들 사이에서 두드러져 보인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이 갖고 있는 가치를 즉각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올바른 선택을 유도해줄 뿐만 아니라 즐기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이유로 디자인은 주요 지식재산으로 부각 되고 있다.

디자인 보호의 초기에는 보호 대상이 평면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저작권적 보호형식을 띄고 있었다. 이후에는 평면과 입체를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 보호제도가 제정되었으며, 등록을 통해 보호하는 특허권적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 보호법과 관련제도는 유럽대륙을 시작으로 도입되었다. 영국은 산업혁명이후 가장 먼저 디자인의 보호에 관심을 보였으며 산업의 급격한 기계화를

생산량·판매량·판매수입·이윤 및 납 부세액·판매지역 등)임.

이루었다. 기계공업의 진보는 곧 방직기계를 발명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섬유산업은 혁신적인 진보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방직기계를 통해 생산된 면직물에는 무늬가 인쇄 되어 대량생산되기 시작하였다. 무늬디자인은 상품의 판매와 수출을 늘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에서는 1839년에 제조상품의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1843년에는 평면적인 무늬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조 산업의 모든 제품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도 1841년 영국과 동일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1842년에 실용미술의 진보를 진흥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러한 모든 것은 디자인 특허에 관한 것으로서 디자인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처럼 디자인으로 기업의 매출이 좌우되는 다양한 제품 분야에서 국제적 디자인 도용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다른 여러나라에서도 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등록 법안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2. 디자인권의 기능 및 역할

디자인은 공산품(工產品)의 장식적인 미에 관한 것이나 기능적인 것(발명, 실용신안의 영역), 개성미적인 것(미술저작물의 영역)이 내포한다. 디자인은 물품을 전제로 하며, 형상을 지닌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즉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으며,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디자인 제도의 목적은 산업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미(美)의 유지 또는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다른 산업재산권제도와 마찬가지로 선원주의(先願主義)·심사주의(審査主義)·등록주의(登録主義)를 채용하고 있다. 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창작성을 가져야 한다. 창작성의 경우는 새롭게 형성된 관념이나 기존 관념의 결합에 의하여 전혀 새로운 것으로 구성된 관념으로 모방이어서는 안 되고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기·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디자인,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의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조형적 임의성이 없는 물품의 형태) 등 네 가지 경우는 디자인을 공

익적 이유에서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디자인보호법」 제39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디자인 보호법」 제40조). 디자인권자는 업(業)으로서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디자인보호법」 제41조). 디자인권은 단순히 모방금지권(模倣禁止權)에 그치는 저작권(著作權)과 다르고, 특허권(特許權)과 같이 차단효(遮斷效)가 있는 독점권(獨占權)이다. 디자인권자는 민사적 규제로서 금지청구권과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며, 법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다.

3. 중·한 양국간 디자인권에 관한 이슈

사회의 발달과 변화에 따라 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한편 디자인의 종류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직물디자인, 패션디자인, 건축디자인, 그래픽디자인, 광고일러스트레이션, 포장디자인, 기계류디자인 등이 디자인 범주에 포함된다. 디자인 보호를 위해서는 다양한 디자인의 각 특색에 따라 보호시간, 보호방법, 보호의 신속성이 요구된다. 디자인산업의 발달이 디자인권의 보호수준에 달려 있다고 할 만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중·한 FTA의 지식재산권 협상에서 상표권 분야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가 바로 중국의 디자인 보호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 디자인을 모방으로써 한국 기업의 디자인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⁵¹⁾과 더불어 중국의 법·제도상의 미흡한 점이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분의장 보호이다. 2001년 7월에 시행된 의장법에 의해 한국에서는 독립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의장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물품의 부분에 대해서 의장등록출원을 하여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볼펜의 클립부분, 승용차의 라이트

51) 2006년 4월부터 8월까지 특허청과 KOTRA가 국내의 중국수출기업과 중국 진출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내 현지기업은 상표(44.3%), 디자인(26.1%), 특허·실용신안(12.5%) 순으로 조사됨(특허청 뉴스, 2006년 9월 28일자 참고).

부분 등 물품의 부분에 독창성이 높은 창작을 한 경우, 그 부분을 보호토록 하여 부분의장의 도용으로 인한 권리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는 부분의장을 보호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예컨대, 한국 차의 앞부분을 중국 업체가 고스란히 모방하더라도 뒷부분 디자인을 조금만 달리하면 이는 의장등록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한국은 중국에 부분의장 보호 인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중국은 적극적인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둘째, 미등록의장 보호이다. 디자인의 모방에 관하여 최선책은 신속한 의장권 획득을 통한 의장의 조기 보호, 조기 권리화(權利化)에 있지만, 한국의 현행 의장법상 의장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발매일로부터 단시일 내 발생하는 모방과 도용에 대해서는 의장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는 현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에 특별 규정을 두어 새로 개발된 디자인에 한해 3년간 등록 없이 모방품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중국에서의 디자인출원은 무심사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출원에서 등록까지 8개월 가량 소요 되고 있어, 디자인 보호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등록되기 전에도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한국과 같은 사법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휴대폰의 경우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는 점차 짧아지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 대략 3개월이면 한국에서 새로 개발 된 휴대폰 제품의 모방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미등록의장을 보호해주는 조치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셋째, 보호기간이다. 한국의 디자인 보호기간은 등록 후 15년간이나, 중국의 경우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이다.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한 상표권과 달리, 디자인은 보호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보호되므로 양국의 보호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중국의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제3절 특허 분야

1. 특허권의 의의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인 ‘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특허법 제94조). 발명은 ① 산업상 이용가능성, ② 신규성, ③ 진보성 등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권리로서 등록될 수 있으며, 특허청은 위와 같은 요건과 더불어 그 출원이 법에서 정한 각종의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특허권 부여여부를 결정한다. 일단 특허권이 부여되면 일정기간동안 다른 사람은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양도 및 대여의 청약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만약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특허권 침해로 원인으로 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특허법 제126조, 제225조).

그런데,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함에 있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사항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⁵²⁾ 그러나 무형의 기술적 창작인 발명에 대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범위를 특허청구범위의 문구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에는 발명의 추상성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특허청구범위⁵³⁾의 표현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특허청구범위로부터 발명사상을 추출하여 법률적 가치판단이 가미된 해석이 필요하다⁵⁴⁾. 특허법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⁵⁵⁾, 특히 침해소송에서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항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참작되어야 한다.

52) 이러한 입장을 문언 중심의 원칙 또는 용어책임론(Patentee as Lexicographer)’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53) 특허법 제42조제1항, 제2항은 ‘특허청구범위’를 특허출원서의 필수적 첨부서류 중 하나인 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는바, 특허청구범위제도는 특허제도에 있어서 발명자의 권리주장을 용이 하게 하고, 특허권의 범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하여 생겨난 경험적 제도이다. 이수완, 발명과 특허청구범위와의 관계, 특허법의 제문제(상),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3), 6면; 사법연수원, 특허법(2007), 378면에서 재인용.

54) 이경란, 임병용, 특허법(제6판 증보판, 2008), 한빛지적소유권센터, 644면.

55)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2. 특허권의 보호 필요성

최초의 특허제도는 1474년 베니스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당시의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과 기계’를 발명한 사람에게 10년의 특권을 인정했다. 16세기 독일의 일부 소국들과 17세기 이후 영국이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이 제도를 활용했다. 프랑스는 1791년에 미국은 1793년에 오스트리아는 1794년에 특허제도를 도입했다. 오늘날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프랑스에서 특허법이 제정되고 나서 반세기가 채 되기도 전에 특허법을 제정했다. 또한 이들은 19세기 후반에 1709년 영국이 최초로 도입한 저작권법과 1862년 영국이 최초로 도입한 상표법과 같은 다른 여러 가지 지적소유권 법률을 도입했고, 얼마 뒤에는 특허와 상표에 관한 파리협정(1883년) 저작권에 관한 베른 협정(1886년)과 같은 지적소유권에 관한 국제협정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이런 국제협정들조차도 기술 군비경쟁에서 사용되던 ‘불법적인’ 수단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다고 한다⁵⁶⁾.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독점권을 가진다(특허법 제94조). 새로 개발되는 상품은 수년 또는 수십 년에 해당하는 노력이 투입된 결과물일 수 있으며, 특허권은 이에 대한 보상일 것이다. 그러나 복제는 단 몇 초 만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하여 모든 권리가 그러하듯 특허권에 대해서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는 자가 있기 마련이다. 생명, 신체, 기타 유형적 재산에 대한 침해는 외부에서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그 손해 정도도 비교적 객관적으로 산정 가능하지만, 특허권에 대한 침해는 공개된 발명 지식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손해의 범위도 무형적인 영업손실, 특히 침해가 없었더라면 있었을 가상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산정이 매우 어렵다. 그렇더라도 이런 권리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구제 수단이 없다면, 특허권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해 각국은 특허법 등에서 여러 구제수단을 두고 있다.

56) 장하준 지음 이순희 옮김, BAD SAMARITAN(나쁜 사마리안들), 부·키(2007), 202면.

3. 중·한 양국간 특허권에 관한 이슈

중국의 특허제도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의 보호 원칙과 그 수준은 TRIPs 협정과 파리협약, PCT 및 부다페스트조약 등 국제조약 가입을 거치면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재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특허제도와 한국의 특허제도를 비교하였을 때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은 특허의 등록요건인 ‘신규성’⁵⁷⁾에 있어, 한국 현행 특허법상에서는 신규성 상실 사유로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과 “특허출원 전에 국내 혹은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을 들어 이에 해당되면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4절 집행(Enforcement) 분야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명목상의 법률보다는 실제 집행정도가 실질적인 보호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실제 집행정도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집행문제가 가지는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지금까지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중국의 집행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이들 논의를 중심으로 중·한 FTA에서의 집행 관련 예상 이슈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1.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의 구조적 문제점

중국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WTO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 보고서들의 공통적인 평가는 바로 집행측면에 있어 중국의 TRIPs 협정 의무

57) 특허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자에게 그것을 공개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러한 권리는 ①발명의 성립, ②산업상 이용가능성, ③신규성, ④진보성, ⑤현행법상 불특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것에만 부여된다.

수행이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USTR의 NTE 보고서에서는 중국 정부·부처 간 조정 문제, 법원과 행정조직의 전문인력 부족, 집행과정 및 결과의 불투명성, 지역보호주의 및 부 정·부패 등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고 있다. 특히 일본은 TRIPs 이사회에 제출된 의사록에서 중국이 가지는 이러한 한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입장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2. 중국의 행정·형사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

USTR은 2003년 중국의 WTO 이행보고서에서 중국정부의 정기적인 지식재산권 침해단속이 효과적이지 못한 원인으로 첫째, 매우 낮은 벌금 수준 (벌금이 모조품 및 해적판의 정품 가격이 아닌 침해 품 가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벌금이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침해의 피해규모 및 벌금수준을 책정하는 데 있어 팔리지 않은 모조품은 제외하고, 이미 팔린 모조품 중 침해자가 판매량을 기록한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는 점 등이 지적됨), 둘째, 행정집행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 등을 거론하였다. 또한 중국의 형사 집행이 침해억제책으로서의 효과가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형사 처벌의 기소표준이 높아 통상 기소표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 처벌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들고 있다.⁵⁸⁾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중국 내 모조품이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정부의 정기적인 침해단속 활동에도 불구하고 영화, 음악, 출판, 소프트웨어, 의약품, 정보기술, 의류, 섬유, 신발, 기타 소비재, 음식, 음료, 전자기계 및 자동차 부품, 기타 산업재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모조품 및 해적판이 생산되고 있어 교역 상대국의 상품, 브랜드 및 기술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중국 내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모조품의 조잡성과 품질문제는 국내기업의 공신력과 한국 제품의 평판저하 및 판매 감소로 이어지므로, 이는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측면

58) Stewart(2005, p. 183) 참고.

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중·한 FTA를 계기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집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중국의 행정 및 형사 집행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⁵⁹⁾

59) 조미진·엄부영·박현정(2007.12.24) 『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점검』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7-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53-62

제 4 장 중·한 FTA 지식재산권 협상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안

중·한 양국은 정치, 경제, 과학기술 및 문화 등의 배경이 다름에 따라 지식재산권 법률제도도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중·한 양국은 양측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통일하거나 일국을 강박하게 상대방에게 자신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받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쌍방의 지식재산권 법률제도를 조화롭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⁶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제1절 전담행동 전개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법복제 제조, 판매 척결 전담행동을 결함하고, 중앙정부기업의 지식재산권 자치 감찰 교정 활동을 확실히 전개하며, 중앙정부기업의 적당한 지식재산권 긴급대응책 제정을 마련해야 한다.⁶¹⁾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법복제 제조, 판매 전담활동 요구에 근거하여, 전국세관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배치하여, 수출입관리 침해 위법행위 척결의 강압적인 형세를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며, 다양한 수단과 방식으로,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분석과 처리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 권리자와의 공동시스템을 끊임없이 완비하고, 수출입 권리침해 상품에 대한 위법행위에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권리 침해 및 불법복제품 제조, 판매 척결 전담행동 실효를 제고하

60) 田君重 (2010) 『한·중 FTA협상의 주요 이슈와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公州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國際通商學科 석사논문 p.72.

61) 『2011年國家知識產權戰略實施推進計劃』 國家知識產權戰略實施部國際聯席會議辦公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고, 해외상표 권리침해와 유명상표의 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며, 악의적인 상표 등록 행위를 단속하고, 상표표시를 불법 인쇄, 제작, 유명상품 포장장식을 위조하는 행위를 엄격히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생산영역에서 지식재산권 권리침해 및 불법복제품 제조, 판매 척결의 전담행동 각 업무를 추진하여 실시하고, 주요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며, 지식재산권 권리 침해 단속의 장기적 업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구축하고, 「12365」 신고 처벌 지휘시스템 구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가짜단속, 명품보호’ 업무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법복제품 제조, 판매 척결 전담행동을 합법적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법에 의거하여 지식재산권 형사사법보호 역량을 키워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행위를 엄격히 제재하여 범죄를 처벌하고 진첩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법복제품 제조, 판매 척결 전담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의 범죄를 합법적으로 엄격히 척결하고, 적시에 체포령을 내리고 고소하며, 중대하고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일상 집행 강화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사건 처리 안내책자를 조직적으로 편찬하고 법집행자의 정확한 이해와 활용관련 법률을 도와, 사건수락과 처리 업무를 규범화하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설치 시장의 관리감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컴퓨터생산기업에 대한 발원지 관리를 집중 강화하여, 소프트웨어 등 주요상품에 대한 시장 감독관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 「판권행정집법 지도의견」을 정식으로 공포하고, 나아가 판권 행정집법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문화시장행정집법기구를 지지하여 판권집법 업무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제3절 지식재산권 사법업무 강화

지식재산권 민사법원이 지식재산권 민사, 행정, 형사사건을 하나로 일치시켜 심사한 시범법무를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관할제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기층인민법원은 관할, 지식재산권 안건 범위를 확대하며, 이미 지정된 법원의 지역관할범위를 완비해야 한다. 기술시장, 창업보육센터, 대학과 학기술원, 생산력촉진센터 등 중소 서비스기구 중, 지식재산권 서비스 내용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상표심사를 철저히 한다는 전제하에 상표사업을 실시 5년 만에 국제적 수준에 이르게 한다는 업무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정보 공공서비스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전략적 신흥 산업 특히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점산업의 특허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완비하여, 특허 정보 응용우수업종양성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제4절 지식재산권 교육과 인재 강화

고등교육기관이 지식재산권 관련 전공을 개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광범위한 학생들에게 지식재산권 관련영역의 부수적 커리큘럼(curriculum)을 설립하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사법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련업무 인원이 직책에 배치되기 전에 그 의미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직업도덕관, 집행규율 교육을 확대 전개하여 전체 집단의 전반적인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국외의 지식재산권 고급인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다양한 형태로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 유학중인 지식재산권 전문인재가 귀국하여 일을 하고 창업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기술인재의 지식갱신 사업계획에 기초하여, 지식재산권과 공통으로 요구되는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전개하고, 전문 훈련계획을 제정하여 기업의 지식재산권 발전을 위한 지식재산권 훈련과 지도를 확대함과 동시에 훈련심사상황을 전문기술인원이 지속적으로 교육받는 심사교육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제5절 지식재산권 홍보와 문화 건설 추진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법복제품 제작, 판매 행위 단속을 더욱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각 지역과 부문이 취하는 적절한 조치를 제때 보도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법복제품 제작, 판매행위를 단속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를 진전시키고 보호효과를 촉진해야 한다.

또한 여론의 감독역할을 발휘하여 불법행위 조사처리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를 보도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폭로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이루고,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법복제품 제작, 판매행위를 자발적으로 억제하는 선진화된 사회 분위기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국제여론의 관심을 결합하여 지식재산권의 대외홍보를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환경이 나날이 개선되고 있음을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 정부가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사업이 긍정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전면적으로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전국 지식재산권 홍보주간, 「전국 지식재산권 전략요강(國家知識產權戰略綱要)」 선포기념일 등 중요한 시점에 군중들이 좋아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지식재산권 법률 법규와 과학지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전 사회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의식을 증강시킬 필요가 있다.

지방 및 학교에서 「의무교육과정 개설방안(義務教育課程設置方案)」 규정을 이용하여 자주적인 교안을 세우는 것을 장려하고,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교육활동을

조직 확대, 수업표준에 근거하여 지식재산권 교육요구에 관한 사상 도덕 과목의 교육자료 편찬 및 교재 수정을 지도해야 한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에 지식재산권 사업활동을 보도하는 특별기획을 만들어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보도함으로써 군중의 지식재산권 의식을 높이고, 지식재산권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양호한 사회분위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제6절 지식재산권 대외교류 및 협력 확대

지식재산권 영역의 국제교류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고위 관료간의 교류, 및 양국 또는 다국간의 상황을 이용하여 중점국가와 지식재산권보호 문제에 관한 소통과 교류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권 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쌍방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구체화하고, 과학기술적이고 혁신적인 지식재산권 사업을 중점에 두고 인재 양성, 주제토론 및 과제연구 방면으로 협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제7절 지식재산권 실시의 조직적인 협력 강화

국가 지식재산권실시 사업 부서간 연석회의를 조직하고, 전략 계획의 감독 및 평가 업무를 확실히 하며, 연구, 교육 및 전략실시 연구기지건설 등의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실시 중에 발생하는 중점 문제에 대하여 문제에 맞는 정확한 지도의견을 시기 적절하게 연구 제정해야 한다.

지방지식재산권 전략의 제정 및 실시를 추진하며, 지식재산권전략 시범구역의 일

련의 활동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지방지식재산권전략 실시 평가사업을 시작하고, 지방발전전략 실시평가를 위한 규범화된 문건도 만들 필요가 있다. 지방지식재산권 전략 실시의 훈련과 교류를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사업이 도시에서 지방으로 확대 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 5 장 결 론

경제 글로벌화 가속에 따른 무한경쟁하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지식재산권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강조하고 있다. 중·한 양국 정부 역시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감안,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관련법을 정비해오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과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요구는 중·한 양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한 FTA 협상 현황과 지식재산권 제도 및 보호 현황을 살펴보고 중·한 양국의 지식재산권법제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FTA 협상의 주요 쟁점을 점검해 보고 중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상표 분야에서 중국의 출원 중인 상표 미보호 문제와 유명상표 보호의 한계점, 디자인 분야에서는 중국의 부분의장·미등록의장 미보호 문제와 디자인권의 보호기간 연장 문제, 그리고 특허 분야에서는 등록요건 중 신규성 상실 요건과 관련된 문제, 집행 분야에서는 중국의 정부·부처 간 조정 문제와 취약한 행정구제 및 형사구제(낮은 벌금, 높은 기소표준 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중·한 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대책 및 제안, 전략을 제정해야 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국가 정책방면으로 상승시켜야 한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중·한 양국의 경제 글로벌화와 지식재산권 규칙의 국제화 발전추세에 맞추어 중·한 양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거시적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 관리능력을 높여야 한다. 대대적인 홍보, 트레이닝 및 교육의 보급을 통하여 전 사회 특히 각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을 높이며 전 사회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존중하고 보호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창조를 잘 결합하여야 한다.

중·한 양국 정부에서 채택한 정책은 반드시 융통성을 구비해야 하며 또한 전세계경제발전 추세를 충분히 연구하며 국제적인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 규칙의 제정에 참가해야 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국제기준으로 발전해야 한다. 중·한 양국의 현 단계 종합 국력과 현실상황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정책과 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

중·한 양국 기업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식 강화 노력이다. 기업 관리와 과학기술 요원의 교육 강화를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념을 강화시키고 기업의 모든 직원들이 지식재산권 보호가 기업의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게 해야 한다. 특히 기업 지도자, 정책 입안자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긴박감, 책임감을 수립해야 하며 뒤떨어진 관념을 변화시키고 기업의 자아보호의식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격려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지식경제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기업의 중요한 기술은 보통 기업의 핵심직원이 파악하며 기업의 핵심기술 시스템은 반드시 이러한 지식형 직원을 주체로 관리되어야 하며, 기업의 지식 창조는 그들의 優性 지식과 劣性 지식과 벗어날 수 없으며 그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다른 직원들과 함께 공유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그리하여 기업은 반드시 격려 시스템을 개선하여 분배관계를 정확히 하며 優性 지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분배제도와 분배형식을 탐색해야 한다.

기업은 창조과 도입 사이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하며 기업의 도입, 배움, 창조라는 자주적 지식재산권의 효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이외에 기업은 광범위하게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관 등 사회 기술 창조자원과 함께 기업 기술센터를 공동으로 완성하고 개발하며 공동으로 기술창조를 진행하고 장기적이고 안정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생산, 배움, 연구를 공동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중·한 FTA 지식재산권 협상과 관련하여 중·한 지식재산권법제간에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에 중·한 FTA 지식재산권 협상에서 한국과 중국이 서로 조화된 협상이 완결될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문성·박순찬·송유철·윤미경·이근(2003.12.20.)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 분석과 FTA에 대한 시사점』, 정책연구 03-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강영수(2005) 『국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 있어서 국제 사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속지주의 원칙의 한계 및 그 수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정실(2005.7.5) 『동아시아내 제조업 분업현황과 한국의 FTA 전략에 대한 시사점』, FTA연구시리즈 05-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강호진·박건영(2006) 『외국의 지적재산권 정책이 한국의 수출규모에 미치는 영향』, 『무역학회지』 제31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 권정인(2007.2) 『지식재산권 법정책의 현황과 과제』, 충북대학교 법학석사논문.
- 김길성(1999.8),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한국기업의 국제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 동서경제연구』 제11집 제1호, 한국동서경제학회
- 김상춘, 김영재(2008.3), 『성장극대화와 후생극대화 지적재산권정책 비교』, 『경제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경제통상학회
- 김송이 『2014년 중국 주요 지역의 지식재산권 전략 분석 및 시사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정책연구 03-04, 2004.11.30.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RCEP 협상동향과 참여국 및 산업계 반응』, Global Market Report 15-006, 2015.1.28.
- 윤선희·이현희, 『한중 FTA를 대비한 양국의 지적재산권법제 비교연구』, FTA법제지원연구 13-26-3-3, 한국법제연구원, 2013.6.14.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중 FTA 주요 업종별 영향과 대응과제』, 2008.12.
- 조미진, 박현정(2007.8)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7-3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중리평(2013.6), 『중·한 FTA에 추진에 따른 경제효과 및 대응방안』,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리 밍(2007) 『한·중 세관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준조, 杜妍慧(2005.11.30), 『중화경제권의 FTA체결현황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 박정현(2012), “한·중 FTA협상: 현황과 전망” 외교통상부 동아시아 FTA 추진기획단, 『관세와 무역』, 제44권 제481호, 한국무역관세연구원
- 박한진·정준규, 『중국기업의 한중 FTA인식과 전망』, Global Business Report 07-115, KORTA 상하이 무역관, 2005.5
- 서민교, 박건영, 오대혁(2006.3.31), “지적재산권 보호가 국가별 수입, FDI, 라이선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 『국제상학』 제21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 서민교, 장동식(2001.2) “한·중간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6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 양정미(2013.2), 『무형문화유산의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연구』, 한서대학교 석사논문
- 류연식(2009), 『중·한 FTA중적지식재산권보호문제』,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무역산업 석사논문
- 이선영(2013.2), 『지식재산권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행정체계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행정학박사 학위논문
- 이신규(2011), 『국제통상론』 서울: 두남
- 이형표(2005.6),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와 그 한계에 관한 研究』,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특허법무학전공 석사학위논문
- 전군중(2010), 『한·중 FTA협상의 주요 이슈와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국제통상학과 석사논문
- 전태형(2014.6) 『한·중 FTA의 필요성과 한국무역에 미치는 영향 -부산기업사례의 적용-』, 동아대학교
- 조미진, 엄부영, 박현정(2007.12.24) 『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점검』,

무역투자연구 시리즈 07-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장렬, “중국 지적재산권 법률체제의 새로운 변화와 시사점” 『제2회 아시아법제 포럼 남북법제분과』 발표문

하승철(2013.12),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보호 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 기술대학교 공학석사학위논문

한상옥(2009.2), 『한중지식재산권의 관리제도와 보호정책에 관한 研究』,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기식, 김현정(2012), “지식재산권 이론을 통해 본 한·중·일 FTA협상시의 시사점”, 국제정치연구 제15집 2호, 동아대학교

산업자원부·특허청·KOTRA(2006.9), 『중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 조사』

삼성경제연구소(2007.8.30), “한·중 지적재산권 분쟁의 현황과 대응”, 『한·중 이슈 리포트』 제2007-23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1), 『2011년국가지식산업권전략실시추진계획』 국가지식산업권전략실시부제련석회의판공실

楊靜, 支文利, 郭慶安(2009), 『韓國知識產權保護制度』

越國(2002), 『知識產權犯罪調查與研究』, 中國檢察出版社, p.14

吳漢東 等(2005), 『知識產權基本問題研究』, 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部.

鄭成思, 『知識產權法律制度』, 九屆全國人大常委會法制講座第十九講

魏巍(2008.10), 『論中韓FTA的可行性及其經濟效應』, 南開大學 經濟學院

周長玲(2012), 『中國知識產權法制的新變化和啓示點』, 中國法學研究第18輯, 韓·중법학회

載劉春田(1998), “回顧中國知識產權制度的建立”, 專利文獻出版社. 湯宗舜(2005), 『著作權法原理』, 北京:知識產權出版社.

黃東黎(2004) 『國際貿易法學』, 法律出版社, 北京.

三星經濟研究所(2006.2.16), 『中國與韓國的FTA及其對韓國電子產業的影響』 No.第 2006-1号

南方日報(2015.02.27) 『中韓貿易額或將突破3000億美元』